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2011. 12

세 법 연구 센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중국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 해관총서 및 재정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함.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목 차

I. 개 관	9
1. 일반개황	9
2. 경제개황	10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0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11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	14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관계	15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18
II.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2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1』	2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23
III. 중국의 통관 환경	27
1. 통관 및 관세 제도	27
가. 통관 행정조직 및 제도	27
나. 중국의 관세제도	32
다. 보세심사 및 가공무역제도	36
라. 수입규제제도	45
2. 중국의 통관 절차	50
가. 통관 기본단계 및 통관 절차의 흐름	50
나. 통관 구비서류	55
다. 통관 관련 기타 요건	57

라. 전자통관시스템.....	58
마. 수출통관 절차(EDI 이용).....	60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62
1. 수입신고.....	64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4
나. 애로 사례.....	77
다. 업무상 유의점.....	78
2. 물품(품질)검사.....	7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9
나. 업무상 유의점.....	82
3. 해관심사.....	83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3
나. 애로 사례.....	86
다. 업무상 유의점.....	89
4. 세액확정 및 세금납부.....	9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91
나. 업무상 유의점.....	94
5. 물품반출 및 환급.....	95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95
나. 애로 사례.....	97
다. 업무상 유의점.....	97
참고문헌.....	100
부 록.....	102
부록 I . Business Tip.....	102
부록 II . 주요 유관 기관 정보.....	110
부록 III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114

부록 IV. 중국 수출입 관세 조례(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mport and Export Duties).....	138
부록 V.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164
부록 VI.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72

표 목차

〈표 I-1〉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11
〈표 I-2〉 중국의 국가별 대외교역규모(2010)	13
〈표 I-3〉 2010년 대(對)중국 10대 투자국	15
〈표 I-4〉 최근 대(對)중국 10대 수출 품목	17
〈표 I-5〉 최근 대(對)중국 10대 수입 품목	18
〈표 I-6〉 중국의 FTA 현황	20
〈표 II-1〉 중국 무역 분야 순위 비교	22
〈표 II-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23
〈표 III-1〉 중국의 제품별 평균관세율(2010)	34
〈표 III-2〉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34
〈표 III-3〉 중국의 지역별 협정세율 범위	35
〈표 III-4〉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41
〈표 III-5〉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46
〈표 III-6〉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52
〈표 III-7〉 무역화물 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55
〈표 III-8〉 화물무역성질별 제출서류	57
〈표 IV-1〉 중국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62
〈표 IV-2〉 부실신고에 대한 5종의 행정처벌(벌금부과)	66
〈표 IV-3〉 1차 강제인증품목	72
〈표 IV-4〉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74
〈표 IV-5〉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 준수사항	75

〈표 IV-6〉 품목분류 애로 사항 사례 1.....	88
〈표 IV-7〉 품목분류 애로 사항 사례 2.....	88
〈표 IV-8〉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97
〈표 IV-9〉 수출입신고서 증명서(증명연) 발급.....	99

그림 목차

[그림 I-1]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입 물량 및 무역수지.....	16
[그림 III-1] 해관기구 설치 모델.....	28
[그림 III-2] 중국 해관총서 본청 조직도.....	29
[그림 IV-1] 화물검사업무 흐름도.....	80

I. 개 관

1. 일반개황¹⁾

-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은 아시아 대륙 동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하며, 국토 면적은 약 960만km²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4개 국가와 육지접경하며, 6개국과 해상 인접함
 - 행정구역은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되며, 북경(Beijing)에 수도를 두고 있음
 -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 중국은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1993년 헌법 제1조 규정) 정부형태는 실질적 공산당 일당통치이고 단원제의 의회형태를 지님
 - 주요 국가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지방의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의 각급인민정부,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이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대륙-대만 간 국가 통일을 실현(1국 2체제 방식)하며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건설 등을 모토로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 질적 경제발전을 추구함
 - 1971년 10월 UN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함

-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대륙 인구는 약 13억 4천만명임(2010년 11월 기준,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²⁾

1)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개황'에서 요약, 발췌(www.gov.cn/).

- 중국은 한족(漢族, 전 인구의 약 93%)과 55개 소수민족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어는 중국어(普通話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임

2. 경제개황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³⁾

- 중국의 2010년 GDP는 5,879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이 중, 1차 산업은 전년 대비 4.3%, 2차 산업은 12.2%, 3차 산업은 9.5% 증가하였으며, 각각 2010년도 GDP의 각각 10.2%, 46.8%, 43.0%의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 증가하였으며, 식품가격은 7.2%, 고정자산투자가격은 3.6%, 공산품 공업원가는 5.5%, 원자재, 연료비 등은 9.6%, 농산품생산가격은 10.9% 각각 상승하였음
- 도시 구직인은 전년 대비 66만명이 증가하여 2010년 1,16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연말登記된 실업률은 4.1%에 달해 작년 말에 대비 0.2% 떨어짐
 - 농민출신 도시 노동자수는 총 24,223만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함
- 2010년 연말 국가 외환보유액은 28,473억달러로, 전년 대비 4,481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연말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은 6.6227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함
- 재정수입은 83,03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4,562억위안 증가로 21.3%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중 세수수입은 13,680위안 늘어 34.0%의 성장률을 보임

2) 중국통계국, "The Sixth National Population Census(www.stats.gov.cn/)"

3) 중국통계국, 「중화인민공화국 2010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2011. 2. 28

〈표 I-1〉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 GDP(억달러)	2,713	3,494	4,522	4,991	5,879
1인당 GDP(달러)	2,069	2,651	3,414	3,749	4,393
경제성장률(%)	11.6	11.9	9.6	8.7	10.3
물가상승률(%)	1.5	4.8	5.9	-0.7	3.3
실업률(%)	4.1	4.0	4.2	4.3	4.1
연말기준환율 (RMB/US달러)	7.9718	7.3046	6.8346	6.8282	6.6227
수출(억달러)	9,691	12,180	14,285	12,017	15,779
수입(억달러)	7,916	9,558	11,331	10,056	13,948
FDI유입(억달러)	695	748	923.95	900.3	1057.4
외환보유(억달러)	10,663	15,282	19,500	23,992	28,473

자료: World Bank Database, 중국상무부, 중국통계국, 중국인민은행, China Customs Statistics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평균 관세율을 15.3%에서 9.8%로 낮추고, 100여 개 서비스 분야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 3천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10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수출은 4.9배 성장하였고 수입규모는 4.7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제1의 수출국이자 제2의 수입국임
- 2010년도 중국의 수출입은 2009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해 일시 감소하였으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출입 규모에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출입의 균형화, 시장다원화 추세를 볼 수 있음
- 2010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은 2조 9,727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7%증가하였고, 1,83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수입증가율

(38.7%)이 수출증가율(31.3%)을 상회함

- ASEAN, 인도,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양자무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함
 - 아세안과 무역의 총액은 2,928억달러, 인도와는 617억달러를 기록하여 각각 37.5%, 42.4%가 증가하였고, 이 외에 호주, 브라질, 러시아와 수출입 총액은 각각 46.5%, 47.5%, 43.1% 증가함
-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자동데이터처리기, 통신전자부품, 선박, 다이오드 및 반도체, 집적 회로, 부품류, TV수신기, LCD 및 광학기기, 프린터, 전자변압기 및 변환기 등임
 - 공업제품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자 기계제품 수출이 9,334억달러 (30.9%증가)로 전체 수출입 총액의 59.2%를 차지하였고, 철강, 의류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임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의 48.1%를 차지함
- 중국의 10대 수입품은 원유, 전자직접회로, 철광석, LCD 및 광학기기, 자동차, 대두, 자동차료 처리기계, 구리제품, 다이오드 및 반도체 등으로 수출상품 구조와 유사성이 강한 편임
 -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구조가 외국산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 하는 가공무역 방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수입상품은 철광석 등이 감소한 반면, 전기기계제품 및 자동차 수입 비중은 각각 34.4%, 93.4%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 등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실적의 43.5%를 차지함
- 2010년 BRICs 와의 양자무역 총 금액은 2,053.1억달러에 달하며 당해 연도 중국 대외 무역 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점유율은 2001년에 비해 300% 증가함

- 중국의 대(對)BRICs 국가 수출상품은 주로 기계전기제품, 첨단기술제품, 방직의류 등 중국의 전통적 수출주력상품이며 수입상품은 주로 철광, 원유 및 농산물 등 원료성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상무부 주관 중국 대외무역 발전전략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5~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안정, 수입확대, 흑자 감소를 추진하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여 2030년까지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중장기 전략으로 세움
 - 2011년은 중국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로 3월에 소집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발표함
 - 양회에서의 초점으로는 ‘민생안정’을 포함하여 물가, 부동산, 소득세 등 민생안정책을 집중 논의하였고, 그 밖에 신흥전략산업 육성,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논의가 이루어짐

〈표 I -2〉 중국의 국가별 대외교역규모(2010)

(단위: 천달러, %)

국가	수출		수입		전체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EU	311,235,423	31.8	168,477,128	31.9	479,712,552	31.8
미국	283,303,720	28.3	102,037,633	31.7	385,341,353	29.2
일본	121,061,359	23.7	176,706,929	35	297,768,289	30.2
ASEAN	138,206,703	30.1	154,569,840	44.8	292,776,543	37.5
한국	68,771,134	28.1	138,399,453	35	207,170,587	32.6
호주	27,226,035	31.9	60,866,033	54.1	88,092,068	46.5
브라질	24,462,540	73.3	38,087,022	34.7	62,549,563	47.5
인도	40,918,804	38	20,841,156	51.8	61,759,959	42.4
러시아	29,612,523	69	25,836,264	21.7	55,448,787	43.1
남아프리카	10,802,761	46.7	14,845,731	70.4	25,648,492	59.5

자료: China Customs Statistics, 2011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⁴⁾

- 중국 해관총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전국 외국인 투자기업은 27,406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94%가 증가하였고, 투자 총액은 약 1,057억달러에 달하여 전년 대비 17.44% 성장폭을 보임
 - 2010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업 및 중·서부 지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투자가 전년보다 28.6% 증가한 487.1억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46.1% 비중을 차지함
 - 지역별로 중부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8.6% 증가한 68.6억달러, 서부 지역은 26.9% 증가한 90.2억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2010년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약 1조 6천억달러로, 전년 대비 31.45% 증가하였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53.83%를 차지함

- 2010년 기준, 대(對)중국 10대 투자국(지역)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며 이 지역의 실제투자금액은 동기 전국 실제투자금액의 90.1%에 달함

- 향후 서부 대개발 등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중서부로의 외국인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독자기업 형태의 비즈니스보다는 M&A를 통한 투자가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됨

4) Invest in China, "FDI Statistics(<http://www.fdi.gov.cn/>)"

〈표 I-3〉 2010년 대(對)중국 10대 투자국

(단위: 억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지역/ 국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투자 금액	674.74	67.01	56.57	42.42	40.52	26.93	16.42	12.39	9.52	9.33

주: 실제 투자한 외국자본 금액으로 계산

자료: 중국상무부,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Administration(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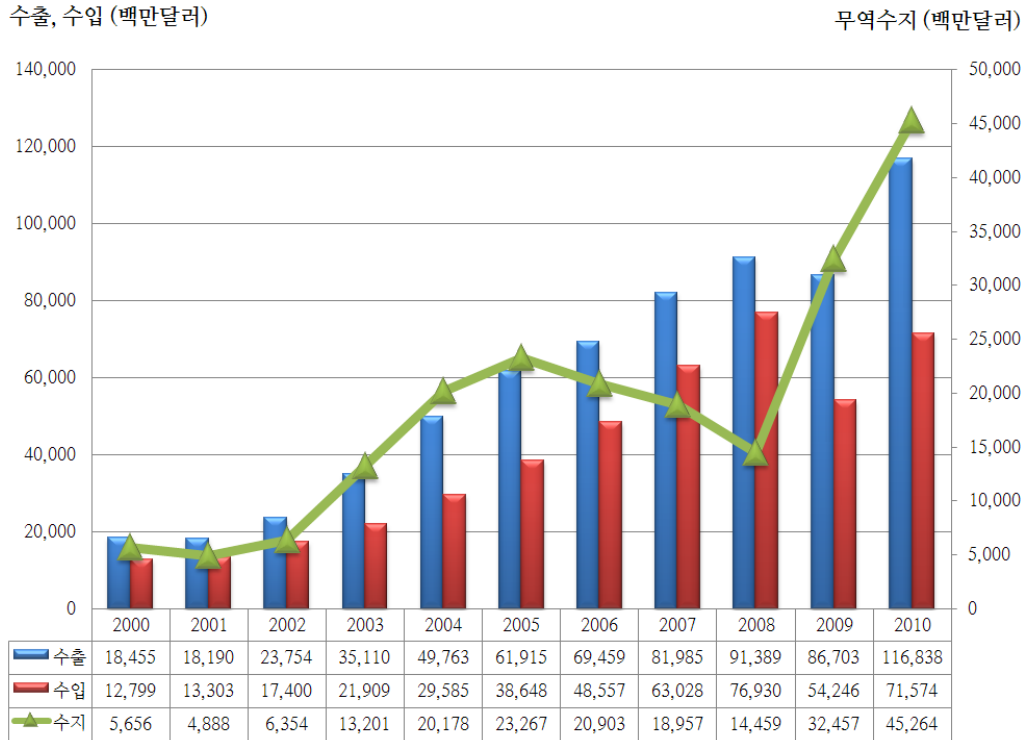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관계

- 2010년 말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1,884억달러이며 이는 1992년 수교 당시에 비해 약 30배가량 증가된 수치임⁵⁾
 - 교역의 급격한 신장 추세에 따라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1993년 이래 대(對)중국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2010년 현재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임
 - 투자 측면에서 볼 때, 2010년 말 기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누계는 21,016건으로 319억달러에 달함⁶⁾

5) 관세청 통계(2011)

6)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2011)

[그림 1-1]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입 물량 및 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LCD, 반도체, 컴퓨터 등 3대 IT제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입품목으로는 의류를 대체하여 반도체, LCD, 컴퓨터 등이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양국의 산업 내에서 수평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교역품목이 중첩되고 일부 품목에서 양국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양국 간의 산업 내 무역이 증가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긴밀한 상호보완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시장개방확대, 상호투자증가에 따른 교역증가, 서부대개발 및 내수확대정책 등에 따른 유발수요 증가 등으로 양국 간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중투자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높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도소매업, 금융업 투자비중이 증가함

〈표 I-4〉 최근 대(對)중국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0년			2011년(1월~10월)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116,837,833	35	총 계	111,339,991	17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41,327	4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6,866,970	11
2	반도체	17,185,637	87	반도체	13,111,829	-10
3	합성수지	6,947,396	22	석유제품	9,208,261	7
4	석유제품	6,792,100	46	합성수지	6,240,437	10
5	무선통신기기	4,730,742	-24	석유화학합성원료	3,769,866	34
6	자동차부품	3,782,811	42	무선통신기기	3,707,652	-8
7	석유화학합성원료	3,536,530	18	자동차부품	3,611,513	20
8	철강관	3,208,616	7	석유화학중간원료	3,075,674	51
9	석유화학중간원료	2,519,790	17	철강관	3,064,747	17
10	컴퓨터	2,500,663	1	기초유분	2,536,345	60

주: MTT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I-5〉 최근 대(對)중국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0년			2011년(1월~10월)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71,573,603	32	총 계	72,084,751	24
1	반도체	6,582,452	42	반도체	5,622,361	3
2	컴퓨터	6,013,155	39	컴퓨터	5,060,721	3
3	철강관	3,994,225	32	철강관	4,859,025	45
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939,724	14	무선통신기기	3,746,808	77
5	무선통신기기	2,824,205	6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533,658	11
6	의류	2,796,533	26	의류	2,926,302	29
7	정밀화학원료	2,225,970	53	정밀화학원료	2,576,657	46
8	정전 기기 (static electric)	1,672,839	57	정전 기기 (static electric)	2,217,327	76
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665,384	82	전선	1,551,860	28
10	기구부품	1,594,710	22	기구부품	1,453,151	11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⁷⁾

- 중국은 FTA 체결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블록화에 순응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개혁, 발전, 창조, 상생을 촉진하는 전략적 조치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대외무역의 안정 및 신속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고 이는 긍정적 성과를 거둠

7) 중국 상무부(2010), “2010년 중국 FTA 추진과 발전” 보도자료 발췌, 요약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추진한 “FTA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FTA 협상과 연구를 적극 추진하였고, 기업의 수출입에 있어 안정되고, 투명하며, 자유롭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중국·ASEAN FTA는 중국이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FTA이며 2010년 1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ASEAN은 현재 중국의 제3대 무역상대로 2010년 기준, 중국의 대 ASEAN 수출은 총 1,382억달러에 달하며, 수입은 1,546억달러로 동기 대비 각각 30.1%, 44.8% 증가함
 - 중국은 주로 선박, 강철, 섬유복장, 도자기 등 제품을 수출하며, 동, 천연고무, 코코아 등 자원형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특징을 지님

- 각 FTA 발효 이후 중국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기업들에게 발급한(홍콩, 마카오 제외) FTA협정 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총 59.7만건으로 동기 대비 70.5% 증가하였으며 금액 역시 217억 3,000만달러로 동기 대비 104.3% 증가하였음
 - 중국과 ASEAN간의 FTA원산지증명서는 40.9만건으로 동기 대비 79.3%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142억 8,000만달러로 120% 증가하였음

- 중국은 2009년에 페루와 2010년에는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한 FTA 관·산·학 연합연구를 종결하였으며, 중국-스위스 간 FTA 체결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완료함
 - 중·일·한 삼국 간의 FTA 관·산·학 연합연구가 공식출범하였으며, 제1차 전국 FTA 업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FTA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함

〈표 I-6〉 중국의 FTA 현황

기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중국 - 아세안 중국 - 홍콩 중국 - 마카오 중국 - 칠레 중국 - 파키스탄 중국 - 뉴질랜드 중국 - 싱가포르 중국 - 페루 중국 - 코스타리카 중국 - 대만	중국 - 걸프만협력회의(GCC) 중국 - 호주 중국 - 아일랜드 중국 - 노르웨이 중국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중국 - 인도 중국 - 한국 중국 - 일본 - 한국 중국 - 스위스

자료: China FTA Network(<http://fta.mofcom.gov.cn/>)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으로 기존의 방콕협정(ESCAP)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정되었으며 2006.9.1일부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화된 특혜관세를 적용함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출입경검사 검역국 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함

Ⅱ.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1』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1년에 발간된 당해 보고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183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을 수록함
 - 『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폐업(Closing a business) 등 9개의 지표임
 -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6위에 랭크되었음

- 당해 보고서의 무역 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보고서에 이어 2011년 보고서에서도 8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하였음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연간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중국은 전반적인 사업의 용이성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3국 중 79위에 랭크되었음

- 중국은 최근 5년간 현지 기업들을 위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Doing Business 2011』 지표에 총 9개 지표의 변화로 15위에 올라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신회사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최저자기자본비율(minimum capital requirements)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36%에서 118%로 대폭 축소되었고, 2006년 새로운 신용등록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64%의 성인이 신용기록을 보유함
 - 2007년 물권법을 시행하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며 담보물 범위가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폭넓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
-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 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이전 년도인 2010년 보고서상 47위에서 다소 하락한 50위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대비 무역 분야 지표에는 변동이 없으나 타국의 제도 개선에 따른 상대적 순위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표 II-1〉 중국 무역 분야 순위 비교

구분	중국	East Asia & Pacific	OECD	브라질	인도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7	6.4	4.4	8	8	3
수출소요시간(일)	21	22.7	10.9	13	17	8
수출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500	889.8	1,058.7	1,790	1,055	790
수입필요서류(개수)	5	6.9	4.9	7	9	3
수입소요시간(일)	24	24.1	11.4	17	20	7
수입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545	934.7	1,106.3	1,730	1,025	790
무역분야 순위	50	-	-	114	100	8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표 II-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단위: 일,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14	250	15	260
세관통관	2	70	4	70
항만(터미널)	3	85	3	80
내륙운송	2	95	2	135
합 계	21	500	24	54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 중국에서는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당 약 50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7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 당 약 54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5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4일이 소요됨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1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⁸⁾

-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2011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관세율 인하, 수입 쿼터의 규제대상 품목 축소, 수입품목 및 수입허가 절차의 투명성 확대, 외자기업의 무역권리 확립 등 무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7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대외무역사업자의 범위를 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외 법인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무역권을 허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등록절차에 대해 불편사항을 보고함
 - 중국은 석유, 설탕 등 특정상품은 국영무역을 유지하고, 곡물, 면화, 식물성기름, 비료 등은 여전히 TRQ⁹⁾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 산업과 경쟁에 민감한 상품에 대하여 높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함
 - 음악·영화·서적 등 저작권 보호 대상 물품에 대해 중국 내의 해외업체들에게 무역허가 시스템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대체정책인 NEV plan¹⁰⁾에는 기술보호주의정책 추진, 철강 산업 발전정책을 통한 외국기업차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기위한 VAT 차별정책¹¹⁾, DAP¹²⁾를 제외한 국내 비료상품에 대해 VAT 특혜 적용 등이 있음

- 대형 오토바이 35%,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레코더 및 플레이어 약 30%, 건포도 35%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함

- 수입상품 등급관리제도에 있어서 세관원의 자의적 상품분류, 수입품목 관세평가 시

8)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9) Tariff Rate Quotas: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며,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경제용어사전).

10)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계획(2011~2020) (The Energy Saving and New Energy Vehicle Development Plan)

11) 중국은 2004년 3월 본 정책을 폐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게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재정지원 실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12) Diammonium phosphate: 인산이암모늄

일관성 결여,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 대신 참고가격제도(reference pricing)를 적용함

- 소프트웨어 로열티나 인증 수수료와 관련하여 관세 평가 결정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CD-ROM이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콘텐츠에 귀속된 가치(imputed value)에 의해 관세를 부가함
- 통관 절차가 항구에 따라 다르고,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정하지 못하며, 수수료도 과잉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 국경무역에 있어서 1994년 GATT협정에 규정되기 이전에도 러시아의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에 특혜를 주었으며, 2003년 봉산을 포함한 19가지 상품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품 수입에 대해서 여전히 특혜를 제공함

□ 중국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애매한 언어를 사용하며 절차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함

-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가금류, 자동차의 등 미국 생산 수입품들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함

□ 은행, 보험, 통신서비스 진출 요건이 까다로우며, 부적절한 수입농산물 검역, 수입 물량을 제한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SPS¹³⁾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2006년 식물성 기름에 대한 TRQ의 단계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밀, 목화, 옥수수, 벼와 쌀, 양모, 설탕 및 DAP를 포함한 3개의 화학비료에 대해 TRQ 시스템을 적용하

13)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하며,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외교통상용어사전).

고 있음

- 비료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쿼터 할당 및 투명성문제, 비료의 주원료인 인광의 수출금지정책 등으로 02년~09년의 7년간 미국의 대중(對中) 비료시장 교역량 1/14로 감소

□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이나 기타 해외 하류제품(Downstream Product)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 중국의 수출규제가 인위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투입 수출단가를 상승시킬 경우, 국제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원자재 국내가격을 낮춰 국내 하류 제품의 생산업체들에게 저가 상품을 생산하게 할 경우, 외국 동업 생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 불리함

□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국내법, 제도, 관행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영화 및 TV쿼터, 음성녹음, 투자문제 등을 제기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301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 정책, 관행을 가진 국가 중 미국 제품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중국이 지정되어 있음

- 오프라인 SW, 출판 분야 및 온라인 상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 시스템의 미약함을 지적함

Ⅲ. 중국의 통관 환경

1. 통관 및 관세 제도

가. 통관 행정조직 및 제도

- 중국 해관은 전국 267개 공항만 및 내륙철로 개항지를 관리하며, 15개의 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12개의 보세항구, 59개의 수출가공구, 4개의 종합보세구 등 총 98개의 감시구역을 운영함
 - 2009년 기준 연인원 4억명의 입출국, 24억톤의 수출입화물을 관리함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해 대외개방항구 및 해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해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해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⁴⁾
 - 특수상황의 발생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관의 미설립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해관수속을 거쳐야 함

- 해관기구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해관총서 및 직속해관과 예속해관 등 3단계로 하며,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휘를 받음

- 중국의 통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이며,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部級)기관이 됨

14)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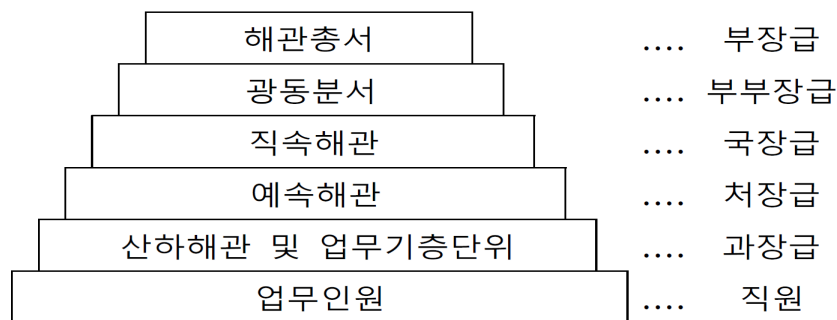
-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국무원의 지휘아래 전국의 해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해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해관시스템의 최고 지휘부문임
 - 해관총서 밑으로는 광주분서(廣州分署)를 둬으로써 광둥성(廣東省) 내의 해관을 관리하는데 보좌케 함

- 중국 해관총서의 주요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을 관리감독,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통계의 작성 및 기타 해관업무의 처리 등임

- 해관총서는 총서장 1명과 6명의 부서장을 두고 각각 2~3개의 사(司, Department) 또는 국(局, Bureau)을 총괄하며, 정원 251명(총서장 1명, 부서장6명)에 1청(廳) 1국(局) 12사(司) 3실(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관총서의 지방조직은 1분서, 46개 직속해관, 580여 개 예속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000여 명(밀수범죄조사국 직원 10,000명 포함)의 인원이 포함됨

[그림 Ⅲ-1] 해관기구 설치 모델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

- 중국해관총서 계급제도는 5등급 13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해관총감,해관부총감), 2등급(관무감독1급~3급), 3등급(관무독찰1급~3급), 4등급(관무독판1급~3급), 5등급(관무원1급~2급)으로 구분됨

[그림 Ⅲ-2] 중국 해관총서 본청 조직도



자료: 관세청(2011)

- 해관총서의 기본임무는 국무원의 지휘아래 전국해관의 「해관법」과 국가의 관련정책, 행정법규에 대한 정확한 시행 및 해관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것이며, 그 주요 업무

는 다음과 같음¹⁵⁾

- ① 각종 해관업무의 방침, 정책, 법률(초안), 법규, 규칙을 연구·입안하고, 전국해관의 집행사항을 조사, 독촉
- ② 관세조례, 수출입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시행
- ③ 전국해관의 법에 따른 수출입 운수기관, 화물 및 물품에 대한 감관을 지휘하며, 제도를 엄격히 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후속관리 강화 및 합법적인 수출입을 편리하게 함
- ④ 관세징수의 감면사항을 통일 관리
- ⑤ 전국해관의 밀수단속을 조직하고 지휘
- ⑥ 관련 납세쟁의와 해관처벌결정에 대한 재심(復議) 신청에 대해 심의
- ⑦ 전국해관 통계를 편제(編制)하고 통계분석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담당
- ⑧ 해관 기술설비를 조직·연구·제정하고 도입·개발하며 이를 응용
- ⑨ 전국해관 조직기구, 인원편제, 급여복리, 전문교육, 전문 직무평가, 소속간부의 임면(任免)을 담당
- ⑩ 전국해관의 정치사상업무를 조직, 지휘하고 사회주위정신과 문명건설을 추진
- ⑪ 전국해관의 경비, 재무, 차량·선박, 과학기술, 고정자산과 기본건설을 관리하고 회계감사 및 감독을 실시
- ⑫ 전국해관공무원의 집행(執法), 수법(守法)활동을 감독하고 공직기강 위반사건에 대하여 조치
- ⑬ 해관관련 문제의 국제조약과 협정 초안 입안 시 참여
- ⑭ 관련 국가(지구) 해관, 국제해관조직 및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 교류, 협력

-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일정구역범위 내의 해관업무를 책임·관리함
- 현재직속해관은 모두 41개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전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 직속해관은 관할구역내의 해관사무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해관총서에 책임을

15)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8호, pp. 10-13

지게 됨

- 직속해관은 관내 해관 각종 업무 및 관내 중점 심사업무, 해관의 각종 정책, 법률·법규,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¹⁶⁾
 - ① 관내 통관업무 실시 및 관리
 - ② 관내 집중심사(集中審單) 실시 및 예속해관의 통관업무 지휘
 - ③ 각종 해관감관구역, 수출입화물 및 운수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관실시
 - ④ 무역관리, 징수관리, 보세 및 가공무역 감관, 기업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 ⑤ 무역통계, 업무통계 및 통계분석업무
 - ⑥ 관내 조사(調查), 심사(稽查) 및 수사(偵查)업무
 - ⑦ 규정절차 및 권한에 따른 각종업무의 심사, 비준, 등록, 보고
 - ⑧ 대외 집행(執法)활동에 따른 협조와 행정 분류, 쟁의의 처리
 - ⑨ 관내 각종 업무의 법 집행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평가

-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구체적인 해관업무를 처리하는 해관으로서 해관 수출입감관 직능의 기본 집행단위이며, 일반적으로 모두 공항만 및 해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예속해관은 전국에 580여 개로 해관업무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科), 실(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원은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2~3백명 정도 되는 곳도 있으며, 예속해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¹⁷⁾
 - ① 신고서 접수, 심사 및 징수, 검사, 면허 등 통관업무
 - ② 관할구역 내 가공무역에 대한 감관
 - ③ 수출입운수기관 및 그 연료, 물자, 비품에 대한 감관과 선박톤세 징수
 - ④ 각종 해관감관구역에 대한 감관과 통제
 - ⑤ 통관,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의 장치, 이동, 면허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감관

16), 17)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 ⑥ 운수기관, 수출입화물, 감관 장소에 대한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에 따른 조치
- ⑦ 관할 내의 통관사 등록
- ⑧ 관할 내의 해관감관구역, 보세운송 업무에 대한 신청수리
- ⑨ 관할 내의 특정 감면세 화물에 대한 사후관리(後續管理)

나. 중국의 관세제도

- 중국의 관세제도를 제정, 심의, 시행하는 정부기구는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로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해관총서, 세무국, 질검총국, 국가법제판 등의 책임자로 구성됨
 - 관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은 국무원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세율 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함
 - 관세세칙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관세세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됨
 - 생산 부문에서는 국산품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세칙위원회는 조사, 심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무원에 이를 제출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관세 관련 주요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 원칙을 가지고 관세제도를 운영함
 -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
 -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 및 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함
 -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또는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

하여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면제함

- 중국의 관세는 WTO 가입 이전에는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으나, 가입 이후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2002년 우대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등 네 가지로 나누었음¹⁸⁾
 - 최혜국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함
 - 협정세율은 세칙 제10조에 규정한 중국과 특정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함
 - 특혜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함
 - 일반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회원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왔으며,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인하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¹⁹⁾
 -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음
 - 이후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몇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하였음
 - 2010년 기준 관세 총 수준은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2%, 공업품 평균세율이 8.9%임

18) 종 연, 『WTO 가입 이후 중국 관세정책의 변화』, 2010, pp. 35~36

19)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pp. 243~246

〈표 Ⅲ-1〉 중국의 제품별 평균관세율(2010)

품목	관세율(%)	품목	관세율(%)
화공재료	5.9	자동차	25.0
농산품	15.6	자동차 부품	10.0
공산품	9.6	화장품	12.8
IT제품	0.0	콩기름, 팜유, 유채씨기름	9.0
전자제품	9.0		

자료: 외교통상부

〈표 Ⅲ-2〉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	43.2	-	2,898
1993	35.9	16.8	3,371
1996	23	35.9	4,900
1997	17.1	26	4,874
1999	16.7	2.4	-
2000	16.4	1.7	-
2001	15.3	6.6	3,462
2002	12	21.5	5,332
2003	11	8.3	3,000
2004	10.4	5.4	2,414
2005	9.9	4.8	900
2006	9.8	0	143
2007	9.8	0	47
2008	9.8	0	45
2009	9.8	0	16
2010	9.8	0	6

자료: 외교통상부

-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ASEAN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6,800여개의 품목에 평균관세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 적용폭을 유지하고 있음
- 홍콩, 마카오 지역의 품목(각각 1,587개, 1,209개)에 대해 영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41개 지역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품목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Ⅲ-3〉 중국의 지역별 협정세율 범위

원산지	적용세율	품목수량	평균세율	평균 특혜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아태무역협정(APTA)세율	1,767	8.9%	23.3%
칠레	자유무역협정세율	7,029	1.3%	87.7%
파키스탄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	6,240	5.3%	43.0%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	7,040	4.0%	61.6%
싱가포르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	2,753	0.0%	100%

자료: 재정부, KOTRA

-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수입 시 관세 이외에 17% 또는 13%(일부 농산물 등)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다. 보세심사 및 가공무역제도

1) 보세수출입화물의 특징과 통관 절차

- 보세화물이란 일반 수출입화물과는 달리 해관의 감관하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화물을 말함²⁰⁾
 -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에서는 보세화물에 대하여 “해관비준을 받고 납세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장치·가공·조립후 재수출하는 화물”이라고 정의함
 - 보세화물과 기타 목적을 위해 일시 수입되는 화물(예: 공사시공, 과학실험, 문화체육활동 등)과는 차이가 있음
 - 보세화물이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은 납부가 일시 면제되었다는 뜻이지 면세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며, 화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다렸다가 해관이 과세와 면세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재수출은 보세화물을 이루는 중요한 전제가 되며, 보세화물은 일반화물과 같이 수입하고 납세수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태 또는 가공 후에 제품을 재수출하여야 함

- 중국은 대외개방확대 및 해외자금, 기술의 유치를 위해 일련의 수입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보세화물과 감면세 대상화물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²¹⁾
 - 보세화물은 중국내 사용 및 소비자가 최종목적이 아닌 재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세우대정책임
 - 감면세화물은 중국정부가 특정 지역, 기업, 용도의 수입화물에 대해 중국 내 사용 및 소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부여한 세수우대정책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업의 기술개조를 위한 선진기술장비의 수입 등

20)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호, 2011

21) KOTRA, 2002

이 감면세 대상에 해당됨

- 감면세화물의 범위는 주로 고정자산투자부분으로 기계장비, 측정기기 등이며 보세화물은 주로 유동자산부분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품 등이 해당됨

□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는 ‘계약등록 → 화물수입 → 장치 또는 가공 → 재수출 → 계약말소 종결’의 순서대로 진행됨²²⁾

- 계약등록은 보세화물 경영회사가 허가서 · 계약서 ·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해관에서 계약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해관심사가 끝나고 등록을 마치면 등기수첩을 발급받게 됨
- 해관에 기 등록된 계약상의 보세화물이 실제로 반입되었을 경우,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이 발급한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입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함
- 보세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허가한 가공생산기업에 교부하여 제도가공을 진행함
 - 장치기간 만료 또는 제품 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동 보세화물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출항지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출절차를 진행함
- 계약등록 만료 또는 가공제품 수출 후에는 일정기한 내에 경영회사가 가공무역 등기수첩과 수출입화물신고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약등록해관에 가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함
 - 해관은 보세화물의 수입과 장치 · 가공 · 사용과 수출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한 후 동 등록계약을 말소종결 처리함
 - 이는 보세화물 전체 통관 절차의 마무리로서 해관과 경영회사간의 감독관리 법률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을 의미함

□ 보세심사는 해관이 보세기업의 경영행위를 검사 · 관리 및 감독하는 것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검사 및 장부대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²³⁾

22)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제2011-1호』, 2011

- 대상기업은 장부 등에 재무상황 및 관련 보세화물 반출입, 사용 등을 기록하고 합법, 유효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당해 장부를 정산할 의무가 있음
- 보세심사시기는 가공기업은 보세가공수책 정산 완료시점까지이며, 물류기업은 보세화물 감시장소 반출시점까지임
- 심사 대상은 보세수입원재료, 수출완제품, 내수판매물품 등의 처리현황 및 보세물류화물 등의 반출입, 판매, 양도 등의 처분현황을 포함함
- 심사 완료 후 15일 내에 결과가 보고되고, 이 내용이 대상기업에 통보되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시행함

2) 가공무역제도의 정책과 관리내용²⁴⁾

- 가공무역이란 래료가공과 진료가공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와 부품, 포장물품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래료가공(來料加工)은 국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원료를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가공비만 받고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가공(進料加工)은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중국은 가공무역을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수단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정책을 실시함
 - 극소수의 민감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쿼터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쿼터하가중 관리도 실시하지 않음
 - 국가에서 면세불허를 규정한 소수 상품을 제외하고는 외상(外商)투자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공무역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의

23) 삼성전자, 『중국 관세제도』, 2009

24) 중국관세무역연구회, 『2011-3호』, 『2011-16호』, 2011

징수를 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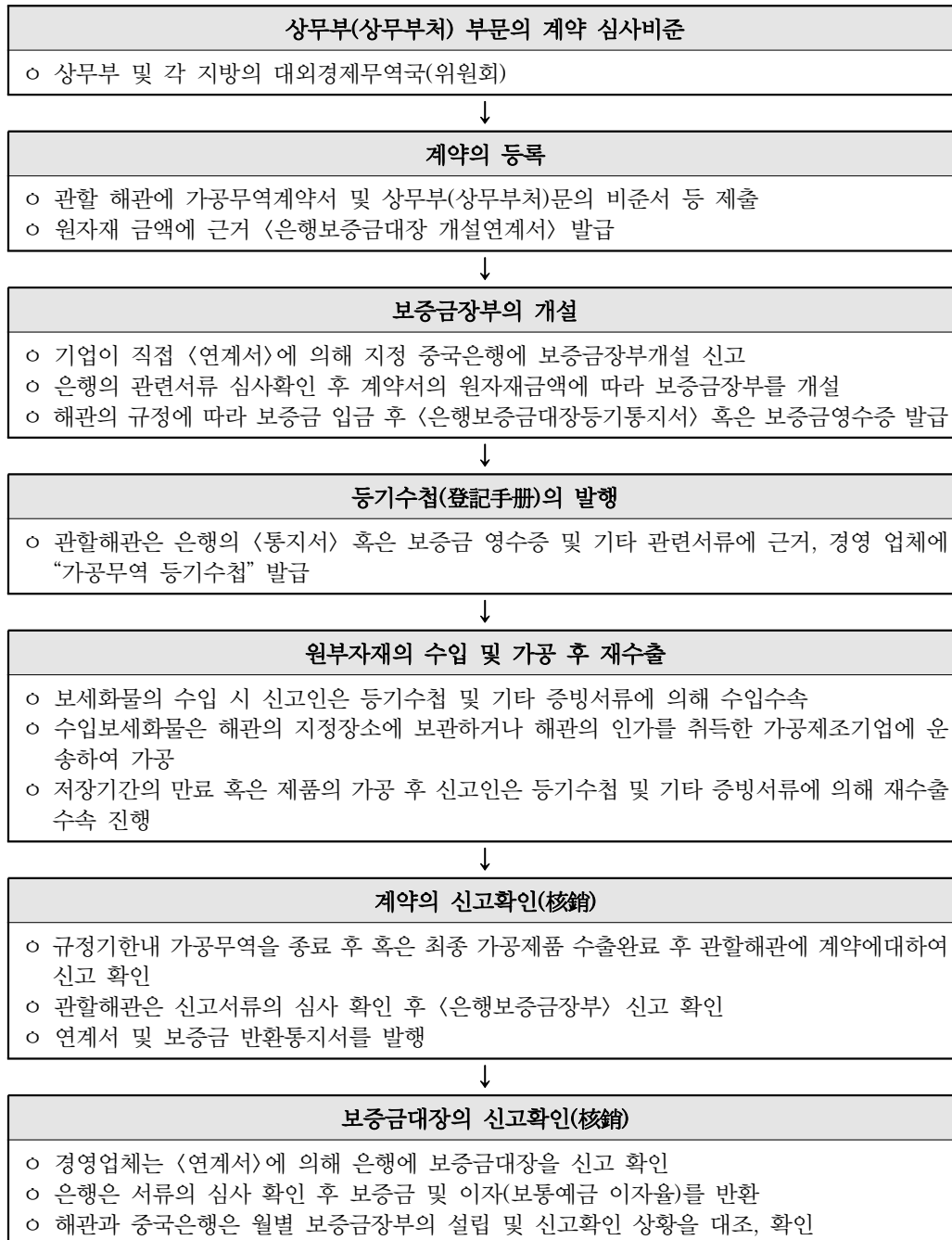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상품에 대한 분류 관리(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를 실시하고,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AA, A, B, C, D류)를 실시함

- 경영회사가 가공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가에서 가공무역 실시를 금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상품종류별로 분급관리²⁵⁾와 분급심사를 실행함
 - 수입원자재가 국가에서 가공무역 수입에 대해 총량평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국을 경유하여 성(省)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함
 -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화, 설탕, 식용유, 양모, 천연아교, 원유, 제품유 등임
 -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성(省) 직속기업은 성(省) 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와 현성(縣)의 각 기업은 등록지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함
 - 경영회사가 가공무역업무 수행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 수출입경영권 비준문서 또는 외상 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영업허가증(사본)과 가공무역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정본)
 - 가공무역업무 비준서 신청표, 수입원자재 신청등록 명세서, 수출제품 및 대응 수입원재료 목록(공히 정본)
 - 경영회사가 체결한 수출입계약서 또는 내료가공 계약서(정본)
 - 경영회사가 가공기업과 체결한 가공협약서(정본)(단, 경영회사가 수출입과 생산을 같이하는 회사라면 불필요)

25)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분급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0』).

- 기타 특정상품에 대한 가공무역업무 시, 원재료 및 가공무역업무에 관한 상술 문서 및 이에 상응하는 관련 비준문서
 - 가공무역심사 비준기관은 제출된 각종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고 자료가 완전하며 오류가 없을 시, '가공무역업무 비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입원재료 신청목록' 과 '수출제품 및 대응 수입원재료소모품 목록'에 날인하여 교부함
- 상무부(상무부처)문의 가공무역경영 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공무역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해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첩'을 수령함
-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하고, 경영기업은 주관 해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해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함
 -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해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 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해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음
- 보세제도의 중요기능은 위탁가공, 원자재조달가공무역 등 대외가공 무역서비스이며, 가공무역 관련 해관, 은행 등의 감독강화 일환으로 중국 해관은 1996년 7월 1일부로 「가공무역의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였음
- 신고인은 상무부(상무부처) 및 해관의 비준서 등에 의해 지정 중국은행에 수입 원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금대장을 개설하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해관 증빙 서류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을 신고 확인함
 - 중국은행은 신고인의 관할해관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분(지)행을 가리키며 중국내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지정은행으로 다른 은행은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표 Ⅲ-4〉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자료: 중국 상무부,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2010에서 재인용

- 가공수출계약을 위해 외국인이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한 보조성 원자재가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을 면제함
 - 예를 들면 해관이 발표한 ‘보조성원자재 목록’(총 78종)내의 품목의 수입액이 5,000달러 미만인 경우 관할해관은 수출가공 계약에 근거하여 소모량을 확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등기수책 및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을 면제함
 - 보조성 원자재 수입 시, 입항지 해관은 관할해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계약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을 통과시키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실제 수출상황에 근거 관할해관이 보조성 원자재의 신고확인을 진행함

- 외국인이 제공한 수입액 5천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의 ‘목록’ 내 품목 및 1만달러 미만의 ‘목록’ 외 품목은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관할해관은 수출 가공 계약에 근거 보조성 원자재의 소모량을 확정 후 가공무역등기수책을 발행하며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 및 가공완성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 및 계약에 대하여 신고 확인함

- 보증금 대장이 면제 적용되는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은 가공수출무역의 목적으로 제한되며 주요 원자재는 중국 내에서 구매해야 함
 - 만일 주요 원자재와 함께 보조성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해관은 일반 가공무역의 관리방법에 따라 계약등록수속을 처리하며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범위에 귀속시킴

- 가공무역 업체를 업체의 성실도,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AA, A, B, C, D, 5종류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음
 - A(AA 포함)류 기업은 해관이 주재원을 파견해 상주하거나 해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위반사실이 없는 보세공장이나 비행기, 선박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가공무역기업임
 - 이 기업들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하여 해관은 보세관리감독을 실시하나,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B류 기업은 과거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가공무역 업체로 비제한 품목의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 예치가 필요 없고, 관세 등을 징수유예함
 - C류 기업은 과거 상무부 및 해관 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시 관세 등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가공제품을 수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함
 - D류 기업은 밀수행위 또는 3차 이상 해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해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가공무역 경영권 취소할 수 있음
- 가공무역 물품은 금지 물품, 제한 물품 및 비제한 물품의 3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함
- 금지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해관이 감독·관리할 수 없는 품목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현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 분해·수선용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주요부품
 - 재배·양식 등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 제한 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해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품목임
 - 주요 물품으로는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스테르절편, 화섬원료, 면사, 면화, 당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
 - A류 기업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가공제품의 수출 후 환급함
 - 비제한 물품은 금지 물품과 제한 물품을 제외한 기타 물품으로 C류 기업을 제외한 기타 업체가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 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을 면제함
- 중국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물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관리함²⁶⁾

- 가공무역 금지 물품은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등 목적, 고오염 배출 및 고에너지 소모품목 등의 가공무역을 계속 금지함
- 종전 금지목록에서 규소, 도자제품, 유리제품 등 44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조정 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총 1,803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임
 -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 식용염, 폐규소 등 1,28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 생석회 등 33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출입금지 품목: 화학조미료, 폐주철 등 181개 품목
- 가공무역 제한 물품은 종전의 제한 물품 중에서 플라스틱원료 및 제품, 목제품 및 방직품 등 총 1,730개 품목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제한품목(2,247개)의 77%를 차지함
 - 조정후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총 500개이며, 그 중 수출제한품목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106개이고, 수입제한물품은 냉동닭 등 394개임

- 중국해관은 가공무역의 지원조치로 가공무역대장의 전산관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보증금 납부 및 정산 등 전산네트워크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전산관리 대상기업은 각 해관이 관할구역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며, 대상은행은 각 해관 관할구역의 중국은행 및 공상은행의 산하분점임
 - 내수판매절차(월별신고 등) 및 무역관리 제한요구 간소화 등을 지원하여 가공무역상품의 내수판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가공수출용 원자재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신청 등 통관 절차가 복잡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²⁷⁾
 - 일부지역의 경우 면세신청과 실제통관 해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
 - 가공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공계약 건별로 원자재의 수입사용 및 제품수출을 기록·관리하는 대장(해관등기수첩)을 해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

26)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27)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pp. 326~330

요되는 기간이 3~7일이 소요되어 원자재 수입이 지연됨

-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한편, 수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수입자재는 수입일부터 1년 내에 완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수출해야 함
 - 이 중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및 천연고무의 가공무역 완성품은 수입, 가공 후 6개월 이내 반출해야 함

라. 수입규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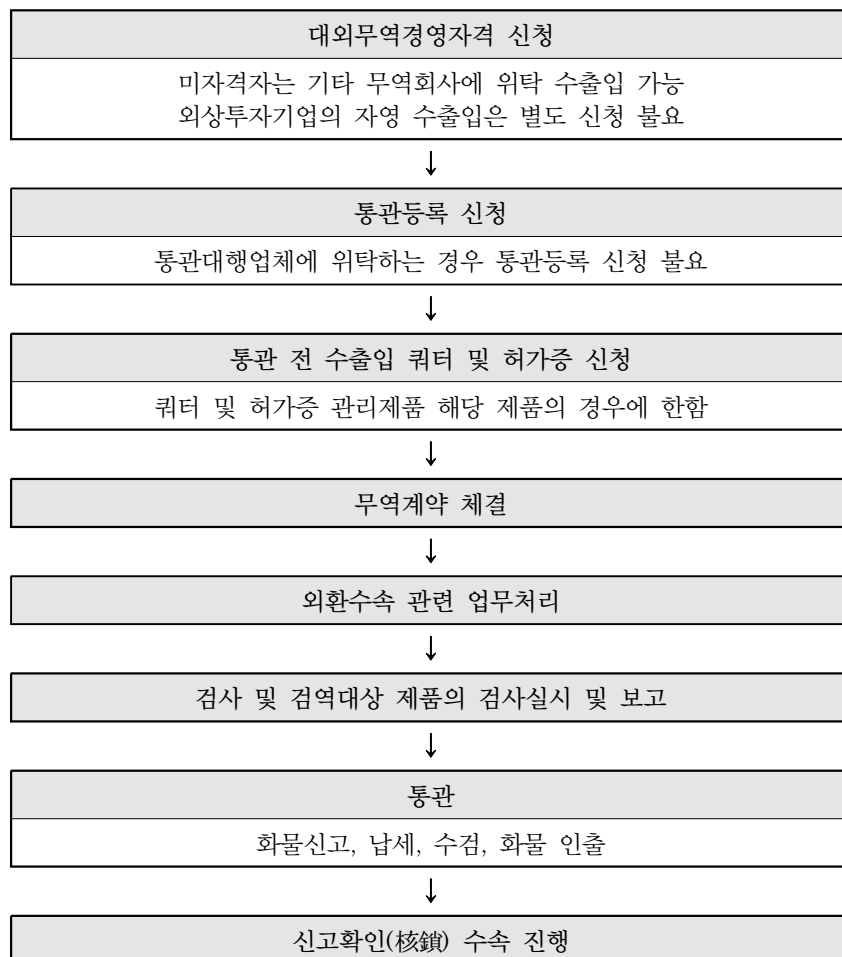
1) 수출입 허가제도 개요

-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킴²⁸⁾
 -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기준, 수출입제한상품의 쿼터 허가증 관리, 수출입 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 상담 및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킴
-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 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성(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 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기업 유형은 주로 7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상무부 소속의 각종 수출입총공사 및 그 하부기구

28) 삼성전자, 『중국 관세제도』, 2009

- 국무원 소속의 공업무역회사
- 성(省)급 소속의 각종 수출입회사
- 외상투자기업
-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제조기업
- 임대수출입회사
- 수출입 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타회사

〈표 Ⅲ-5〉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자료: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2010

2) 쿼터 및 허가증 관리

- 중국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 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²⁹⁾
 -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관리조치로서, 규정한 기한 및 쿼터액을 초과하면 동종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함
 - 허가증 관리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제한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함
 -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2002. 1. 1.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음
 -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省)의 대외경제 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과원 판사처에서 구분 발급함
 -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임

- 합자/합작 기업의 내부용으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품목이면 우선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수입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함³⁰⁾
 - 외국인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내부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

29)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30) KOTRA, 국가정보(중국), 수입규제제도, 2010

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을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 화물 허가증을 면제하며 해관이 보세화물규정에 따라 감독함³¹⁾
 -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내수 상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수입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함
 - 수입금지화물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품, 위조통화, 위조 유가증권, 각종 열성 독극물 및 마약류를 포함함
 - 수입제한화물은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은 쿼터관리제도로, 수량제한이 없는 품목은 허가증 관리제도를 통하여 관리함
 -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 부문의 화물수입 감축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수입자유화물은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함
 - 관세쿼터관리화물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하며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 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 품목을 조정함

-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5. 1.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음
 -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음
 - 2006년 1월 1일부로 콩유, 팜유, 유채씨유에 대한 수입관세쿼터관리제를 폐지하였음

31)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 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 내 구매제품은 제외됨³²⁾
 - 현재 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으로는 총52종의 338개(HS 8코드 단위기준)의 제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 세계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제품
 - 외국의 쿼터제한 혹은 수출제한 제품
 - 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 중국의 중요 특산품 혹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
 - 다음의 상품은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나, 국가의 쿼터입찰관리 제품은 무역방식을 물론하고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상계무역 수출제품(국가 쿼터입찰관리 제품 외의 기타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 가공조립무역의 재수출상품
 - 해외전시회의 재반입 전시품
 - 경제기술교류 등 목적의 해외에 제공한 테스트용 견본품
 - 대외경제기술원조 목적의 수출물자 일부제품 등에 해당되는 허가증 관리제품

- 국가에서 쿼터 또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통관시 반드시 해관에 '수입화물허가증' 또는 '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없음³³⁾
 - 중국에서 피동쿼터관리³⁴⁾를 실시하는 방직품에 대해서 해관은 '방직품수출허가

32)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33)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2011, p.12

증'에 근거하여 면허하며, 쿼터를 실시하는 17종 상품 중 하나인 방직품에 속할 경우 해관은 '수출화물허가증'을 추가로 징구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 면허함

- 수출입허가증 관리상품이 만약 상품검사, 무선전파관리, 동식물검역 등 국가에서 기타 수출입관리를 실시하는 대상에 속할 경우, 수출입 통관시 수권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도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함

2. 중국의 통관 절차

가. 통관 기본단계³⁵⁾ 및 통관 절차의 흐름³⁶⁾

- 통관 절차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운송수단 책임자, 물품 소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규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수출입 및 관련된 해관사무를 처리하는 순서와 차례임
- 일반적으로 화물의 수출입은 수출입신고, 검사협조,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납부, 화물 수령 또는 운송 등의 수속을 거쳐야하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해관의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감관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
 - 가공무역의 원재료 수입의 경우, 해관은 신고와 서류심사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통관수속 외에 사전 준비(備案)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상술한 수입원재료로 완성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산종결(核销结案)한 후에야만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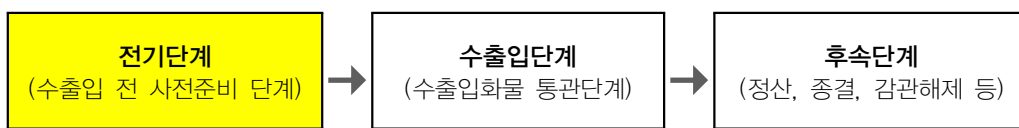
34) 중국은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의 방직품에 대해서는 피동쿼터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로는 미국, EC,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면, 모, 인조섬유, 기타 식물섬유와 사혼방직품 및 기타 제품등 상품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수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상무부 및 그 수권기관에서 발급한 '방직품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수출하여야 한다(『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35)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3호에서 요약·발췌, 2011

36) KOTRA(2002)에서 요약, 발췌

-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하는 전 과정을 살펴 볼 때, 통관 절차는 시간의 전후에 따라 전기단계와 수출입단계 그리고 후속(사후)단계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1) 전기단계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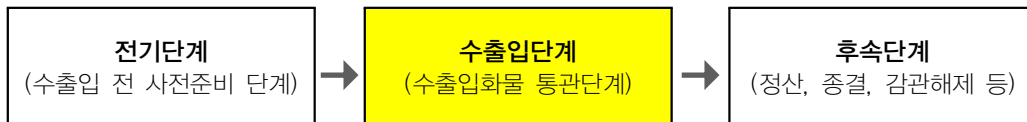
- 전기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함
- 보세가공화물의 경우, 보세가공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무역 준비수속을 하여야 하며, 가공무역전자장부와 전자화수책 개설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함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특정감면세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하며, 감면세증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함
- 임시수출입화물의 경우, 임시수출입화물의 수출입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임시수출입 준비신청 수속을 하여야 함
- 기타 수출입화물 중의 출료가공(出料加工) 화물의 경우에는 출료가공 화물의 수출 전에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료가공의 준비 수속을 하여야 함

〈표 Ⅲ-6〉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무역화물종류	준비사항
보세가공화물	가공무역전자장부와 전자화수책 개설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 신청 및 수령
특정감면세화물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 감면세 증명 신청
임시수출입화물	화물 임시 수출입 준비신청 수속
기타수출입화물	출료가공 ³⁷⁾ 화물의 경우, 출료가공 준비수속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2) 수출입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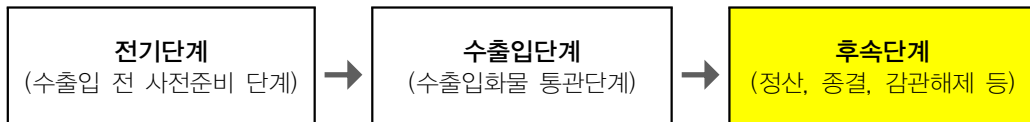
- 수출입화물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반출입’ 등의 4단계를 거치게 됨
 -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해관의 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반출입 → 통관 종료 등 5단계를 거치게 됨
- 신고란,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가리킴
- 화물검사란, 해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 위법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단계임
- 수출입신고 화물에 대하여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37) 출료가공(出料加工): 원료를 국외에 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입하는 형태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도착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및 개포장 등 화물검사에 협력하여야 함

- 관세 징수 및 납부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서 발급한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세비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은행을 통하여 관련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를 해관의 전문계정에 납입하게 됨
- 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의 별도 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함
 - 이 밖에도 수입과정에서 증치세를 징수하며 일부상품은 소비세가 부과됨
- 통관은 수입지 해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마지막 단계로 해관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 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 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시키며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이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됨
 - 보세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납부 수입화물, 임시수출입화물, 중계운송화물 및 기타 미납세 수입화물의 경우 개항지 해관은 신고서류의 심사확인 후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
- 개항지 해관에서 통과된 후속관리대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해관은 규정기한 내 검사확인을 하며 서류보완 및 관세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
 - 가공무역방식 수입화물의 경우, 해관은 가공무역계약 기한내 수입 및 재수출 현황 및 잔고량 등을 확인하며 내수판매분의 서류보완 및 관세징수 등이 이행된 후 가공무역계약의 통관이 종료됨
 - 임시 수출입화물의 경우, 규정기한 내 임시 수출입화물의 재수출입 현황 등을 대조하고 관세징수 및 확인 절차가 이행된 후 최종 해관감독이 종료됨
 - 특정 감면세 화물은 수입화물의 해관감독기한 만료 후 감독해제 신고를 거쳐 ‘감면세 수입화물의 해관감독해제증명’의 발행 후 해관감독 업무를 종료함

3) 후속단계 조치사항



- 후속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은 수출입할 때, 장치, 가공, 조립, 사용,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核销), 종결(销案),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의 업무를 포함함
- 보세가공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함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를 신청해야 함
- 임시 수입화물의 경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시 수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 수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후에 종결을 신청해야함
 - 임시 수출화물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시 수출이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 수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입하거나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난 후에 종결을 신청해야 함
- 기타 수출입화물 중에 출료(出料) 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를 신청해야 함

〈표 Ⅲ-7〉 무역화물 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무역화물종류	조치사항
보세가공화물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 신청
특정감면세화물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 신청
임시 수출입화물	임시 수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종결 신청
기타 수출입화물	출료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나. 통관 구비서류

-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됨³⁸⁾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① INVOICE(운송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② 포장명세서(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③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 ④ AWB(항공운송의 경우)
 - ⑤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 ⑥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 ⑦ 수출대금영수 신고 확인증(수출의 경우)
 - ⑧ 해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 증명서
 -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 증서
 - ① 쿼터허가증(국가계획 부문의 쿼터증명, 상무부 수출입허가증 등)
 - ②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③ 가공무역수책

38) KOTRA, 국가정보(중국) 국가정보, 통관 운송, 2010

- 국가수출장려를 위해 가공무역 업체의 수입원자재 보세처리, 수입통관 시 관세 부과면제, 가공무역수책에 수입사항 기록후, 재수출 수량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리
 -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며, 관할해관에 신청하여 처리
 - 수책기록내용에 근거하여 BOM³⁹⁾갱신 및 수책변화 수출입현황을 관리
- 예비 서류: 필요시 해관이 요구하는 서류
- ① 무역계약서
 - ② 원산지 증명
 - ③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④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 '수출입화물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 해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며, 중국해관의 현행 신고서는 199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무역방식별로 양식 색상이 상이함
- 일반무역방식의 통관신고서는 백색
 -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통관신고서는 분홍색
 - 가공조립무역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녹색
 -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남색
 - 수출세금 환급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황색
-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통관신고서 3부(각각 해관보관용, 해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하며,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통관 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함
- 전산화 등록시스템의 경우 우선 신고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해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통관신고서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신고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짐

39) Bill of Material(제조사양서)

- 위탁가공무역과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경우,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에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수출 시에는 외회수취가 없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 외회수취가 있으면 5부를 작성하여 제5부는 수출외화대금 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함⁴⁰⁾
- 기타 무역방식의 경우, 수입 시에는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수입외환대금결제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수출 시에는 세금환급 혹은 외회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세금환급 혹은 외회수취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함
- 통관업무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화물무역성질에 따라 구분됨

〈표 Ⅲ-8〉 화물무역성질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 무역	정보 운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허가증, 계약서, 통관위임장과 해관이 심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서
래료, 진료 가공무역	정보 운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허가증, 계약서, 통관위임장과 해관이 심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서
임대무역	임대무역계약서, 정보 운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허가증, 계약서, 통관위임장과 해관이 심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서
보세창고화물	보세부서 승인증, 정보 운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허가증, 계약서, 통관위임장과 해관이 심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서

자료: 양천호·김영춘(2005)

다. 통관 관련 기타 요건

- 중국 해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해관에 등록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이며, 해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

40) KOTRA, 국가정보(중국); 통관·운송, 2010

의 신고자격을 확인함

- 해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해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해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어야 하고, 통관인원은 해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이어야 함

□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수입화물의 통관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임

□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함

-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체납금은 통과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엔임

라. 전자통관시스템⁴¹⁾

□ 전자통관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방법」의 요구에 맞춰 해관에 신고서 내용의 전자 자료를 전송하고 붙임증명서(隨附單證)를 모두 갖추는(備齊) 신고방식임

□ 해관 전산시스템에 전자자료 신고서를 전송하고, 해관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신고내

41)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3호에서 요약·발췌, 2011

용을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해관에 제출할 종이신고서를 출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도 준비해야함

- 특수한 경우에는 해관의 동의나 허가를 거쳐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먼저 신고하고 전자 자료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해관의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종이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보관하고 전자자료 신고만 사용할 수도 있음

□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중국해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작업에 있어 전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해관은 성공적으로 다양한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음

□ H883/EDI 통관시스템이란 ‘중국해관통관자동화시스템’의 약칭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화관리를 실시하는 감관실시와 부과징수 및 통계 등 3대 해관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화시스템임

□ 해관 H2000 통관시스템은 H883/EDI 통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시스템이며,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개발된 전국통일 해관정보플랫폼으로서 해관관리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게 됨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 내에서 가공무역의 등기준비를 할 수 있으며, 특정감면세증명서를 신청, 수령할 수도 있고 수출입신고 등 각종 해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게 함

□ 중국전자개항(口岸)시스템은 또한 전자개항(电子口岸)이라고 하며, 컴퓨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무역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정보 전자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집중관리하여 관리부처와 기업들에게 각종 수출입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정보시스템임

- 전자개항시스템과 H2000 통관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전국의 수출입무역서비스와 정보관리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에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통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 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마. 수출통관 절차(EDI 이용)⁴²⁾

- 수출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해관의 수출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자국과 외국 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현재는 EDI 방식을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음
- 수출상품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후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해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이 규정기한 전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관은 수출신고의 인수거절을 할 수 있음
- 이용자격 획득 단계에서는 우선, 중국 전자개항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후, 소재지 기출감독국, 공상국 및 세무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은 후, 소재지 데이터센터에서 업체 법인 IC카드 및 운영자 IC카드를 수령하고, 해관, 외환 및 대외무역 업무 부문에서 심사비준을 받은 후, 기계설비(카드 리더) 및 소프트웨어를 수령함
- 신고 및 신고수리 단계에서는 기계 설비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인 사용자 신원확인(IC카드, 비밀번호)을 하고, 신고서의 자료입력 및 1차 오류를 검사한 후 전자문서로 전송함
- 2차 오류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 데이터 센터(IDC)를 경유하여 해관통관시스템으로

42) 이준진(2010)에서 요약·정리

전송하며, 해관통관시스템은 설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전자신고서의 표준성, 유효성, 합법성에 대해 심사 후 결정함

- 검사·승인 단계에서는 해관통관시스템으로 전달된 신고서의 전자데이터는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되어 수리됨
 - 위험이 낮은 신고서는 ‘녹색경로’로 들어가며, 이 신고서의 전자 데이터가 직접 해관으로 전송됨
 - 위험이 높은 신고서는 ‘적색 경로’로 들어가서 서류심사센터에 넘어가고, 전문 심사담당자가 조회 및 확인 후 수리하면 해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관에 전송됨
 - 수리 통보는 공공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전송됨

- 해관 문서 결재 처리 절차로서 신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수출신고관련 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 등)를 가지고 해관에 가서 문서 결재를 획득해야 함

- 심사 담당자는 수출신고서의 가격신고정보, 화물정보, 업체정보, 체납정보, 검사정보, 요건 확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고서의 공통사항, 품목사항, 세액사항 등을 심사함

- 심사 및 결재가 완료되면 신고수리결과는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자와 수출화물시스템을 통한 해당 해관원에게 통보되고, 신고필증은 신고자에게 교부되며, 해당 해관원은 수출화물시스템을 통하여 수신받은 수리 결과를 확인한 후 화물통과를 허가함

- 통과가 허가된 수출화물에 대해서 해관은 선박/항공의 화주로부터 실제운송화물의 적하목록을 받은 후, 제출된 서류의 전자 데이터와 대조하여 확인된 실제수출화물의 통관 심사 및 삭제 수속을 진행함
 - 신고인이 제공한 증명서의 신청명세서에 의거하여 신고인에게 수출환급신고서, 수출외환수급서 및 가공무역 해관검사서를 서명하여 발급함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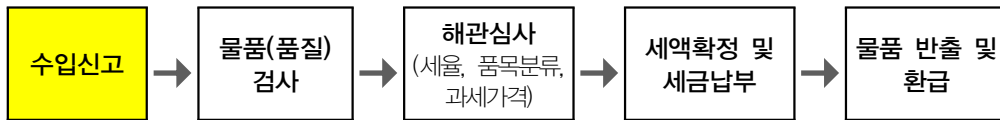
〈표 IV-1〉 중국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신고 전 서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실한(AA, A류) 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수출입신고 전 화물분석 및 사전 품목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해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편이 나으나 해관마다 견해가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함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회 등 주관사에서 비준서, 일시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탁하고 우선통관하고 전시회 종료 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해관과 협의해야 함 ○ 모든 상품은 적절히 상품에 대한 정보(라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원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생산품의 원산지, 수입자 혹은 중국 내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 규정사항을 위반 시, 가산세(과태료)는 50%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제품 가액의 최대 3배까지 이를 수 있고, 또한 부당한 이익금은 전액 환수처리될 수 있음 ○ 제품이 품질표준화규정에 명시된 사람의 건강과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생산과 판매는 금지되며, 페널티는 생산 혹은 판매된 상품가액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물품(품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임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장 및 포장을 수행해야 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숙지한 신고화물의 정황에 대하여 검사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검사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화물에 훼손부분인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해관에서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함

〈표 IV-1〉의 계속

단계	유의 사항
<p>3. 해관심사 (세율, 품목분류, 과세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해야 함 - 수출입 전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함 -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함 -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회사의 대응논리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해관에 제출함으로써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해관 조사관에게 안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다른 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확실한 품목 분류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해관총서 내부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여 해관총서 차원의 종합적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
<p>4. 세액확정 및 세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전자개항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비 납부를 시행하는 해관에서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전자개항을 이용하여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 고지서와 비용수납증명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지정은행에서 전자적으로 세비를 납부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해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잠정지급정지한 계좌항목 중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금충당고지서를 발급하고 압류한 화물 등을 환매한 후 환매소득을 세금을 충당함 ○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이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p>5. 물품 반출 및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급율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함 ○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으로 원상태로 반송수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일로부터 1년 내에 해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과다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1. 수입신고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받은 통관기업이 ‘해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과 장소에서 전자자료신고서와 종이신고서 양식을 채용하여 해관에 실제적인 수출입화물의 정황을 보고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함⁴³⁾
-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 절차의 첫 단계로, 현재 중국해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 등 3가지로 구성됨
 - 해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의 통관인원만이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 관해서는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초과시 신고연체료(도착가격의 5/1,000)가 부과됨
 - 수출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도착후 적재 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까지 해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함
- 전자자료신고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말기 신고방식, 위탁 EDI 방식, 직접 EDI방식, 인터넷 신고방식 등 4가지 종류의 신고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서 내용을 해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자료신고서가 생성됨⁴⁴⁾

43)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2011, p.23

44)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2011, pp.25~26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력을 위탁하거나 또는 직접 신고서 자료를 입력하는 컴퓨터상에서 해관에 전송한 신고접수 내역, 즉 전자신고의 성공 여부를 받아볼 수 있음
 - 만약 해관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수정한 후에 다시 신고해야 함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으로부터 전자자료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현장제출’ 또는 ‘면허제출’이라는 통지를 받게 됨
 -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쇄된 종이신고서와 규정된 첨부서류 및 서명날인을 가지고 화물소재지 해관에 도착하여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해관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화물의 경우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해관에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해관에 신고하며, 타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이전화물로 호칭함
- 케이블, 파이프 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해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 신고제를 실시함
 -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해관에 신고함
-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전자자료와 종으로 된 수출입화물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에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⁴⁵⁾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초 신고를 접수한 해관에 수출입화물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① 통관원이 실수로 신고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조작하였으나, 밀수나 기타 법규위반혐의가 없는 경우
 - ② 수출화물 면허 후, 운송 적재 등 원인으로 당초 신고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45)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2011, p.26

취하 하거나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수출입화물의 적재,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에 따른 멸실 등으로 인해 당초 신고하였던 자료와 실제 화물이 불일치할 경우
 - ④ 무역관례에 따라 임시거래가격을 채용하고 실제로 결산시 상품검사 품질인정 또는 국제시장의 실제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신고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 ⑤ 컴퓨터나 네트워크시스템의 원인으로 인해 전자자료 신고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신고서에 수정 또는 취소가 필요함을 발견하였으나,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수출입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오류 및 미신고시에는 행정처벌이 부과됨

〈표 IV-2〉 부실신고에 대한 5종의 행정처벌(벌금부과)

부실신고 내용	행정처벌
해관통계의 정확성 영향 초래	1천RMB 이상 1만RMB 이하
해관의 감관질서 영향 초래	1천RMB 이상 3만RMB 이하
허가증관리 영향 초래	화물가액의 5% 이상 30% 이하
세금징수 영향 초래	탈세액의 30% 이상 2배 이하
외환·수출환급관리 영향 초래	신고가격의 10% 이상 50% 이하

자료: KOTRA(2010)

- 신고행위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신고서 외에 해관의 요구시 별도의 보완신고서를 이용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 자료를 보완신고 해야 함⁴⁶⁾
- 신고화물의 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등에 대한 심사진행시 요구되거나 신고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심사진행시 원산지증명서 등이 요구될 때, 기반출한 화물의 가격,

46)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p.31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세부조사 및 확인시 등에 요구됨

- 보완신고서는 수출입 신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이 부과됨
- 보완신고는 해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송수하인 등이 기한 내에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관은 이미 파악된 정보에 의거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를 확정함

1) 감면세 정책 및 감면제도⁴⁷⁾

- 감면세 정책은 국가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실시하는 일종의 세수우대정책임
 - 기업과 회사는 감면세 우대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의 신청·사용·보관·처리는 물론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됨
 - 해관은 기업이나 회사가 감면세 화물에 관한 신청절차와 감관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고지함

- 법정 감면대상은 관세액 50RMB 이하 물품, 광고물품, 견본품, 무상기증 받은 물품, 파손물품 등이며, 기술개조 항목 수입물품(국가중점 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와 외상 투자기업 수입물품은 특정감면 대상임⁴⁸⁾
 - 이외에 과학교육용품, 장애인단체 및 개인수입물품, 빈곤구제, 자선성격 기증물품, 원양어업기업이 포획한 수산물, 해양, 육상 석유(천연가스)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됨

- 감면세 신청을 위한 절차는 ‘① 신청회사의 감면 신청 → ② 해관의 감면 심사 → ③ 회사의 감면 승인 신청 → ④ 해관 감면 승인 → ⑤ 해관의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서’ 발급 → ⑥ 수입신고’의 순으로 이루어짐

47)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2호, 2011, pp. 6~8

48) 삼성전자, 『중국 관세제도』, 2009

- 감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화물이 수출입되기 15일 전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관에 수출입화물 감면승인신청을 해야 함
 - 해관은 준비서류 신청과 감면승인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증빙서류가 완전하고 전산자료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내로 수리해야 함
 - 신청사항을 소재지 관할 해관에서 상급 직할해관으로 품의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상급 직할해관은 이첩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승인해야 함

- 회사는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해관에서 감면세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해관은 감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감면세 정책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항목의 감면세액 등의 사항을 확정함
 - 감면세 등록 신청기업에 대한 중점 심사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 등이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허 등 심사결과를 결정해야 함
 -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 해관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등록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해관에 사유서와 규정에 정한 심사비준기관의 의견서를 함께 관할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해관에서는 이를 심사승인 후 변경처리함

- 감면세 등록신청을 한 기업은 반드시 화물이 수출입되기 전에 '수출입화물면세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전하고 유효한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해관에 수출입화물감면세 승인신청을 해야 함
 - 화물이 수출입되기 전에 감면세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화물에 대한 감면세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관에서는 감면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해관은 국가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면세불허 상품이 아닌지 여부, 감면세액 한도 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면세증명서'를 발급함

며, 이때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 발급받은 '면세증명서' 중에 직접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승인을 받은후에 변경이 가능함
- 기업이 기 발급받은 '면세증명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관의 심사와 '면세증명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되지 않은 원래의 '면세증명서' 전자자료를 폐기한 후에 재발급 가능함

□ 감면받을 수 있는 화물에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기업이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에 감면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기업은 화물의 실제 수출입 후 3개월 이내에 '면세증명서'와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해관에서 감면세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물품에 대하여 기업이 사전 반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해관에서 발급한 감면세 승인 여부를 심사중이라는 증명서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관에 제공하고 담보반출을 신청해야 함

- 세액담보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기업이 관할해관에서 발행하는 현재 감면세 심사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한 후에 반출할 수 있음

□ 회사는 해관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수입감면세 화물을 전매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해관에 감면세 화물의 사후관리 종결 또는 세금납부신청을 해야 함

- 감면세 사후관리 화물을 전출·전입한 회사는 각각 전출·전입지 해관에 감면세 사후관리 화물의 반출·반입신고를 해야 함
- 회사가 부득이하게 해관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감면세 사후관리화물을 기타 감면혜택이 없는 회사에 전매하고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해관에 사후관리 화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함
- 사후관리화물을 전매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회복되지 않으며 사후관리 화물이

전입된 회사는 화물의 거래가격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사후관리기한은 연속해서 계산됨

2) 수입인증제도

- 국가표준은 전기전자제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중국 수출과 현지 생산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 규정 등에 있어 자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는 특성을 보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화를 숙지하고 이를 제품 생산, 개발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기조로 내걸었고, 2008년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수정판 에너지절약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국책기조로 삼고 있음

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실시

-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 제도로서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국무원이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함
 -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조례」에 기초하여 검사대상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함
 - 강제인증 시행품목은 반드시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중국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인증을 취득한 상품은 강제인증마크를 구입,

부착한 다음에야 중국 내에서의 판매와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함

- 위반 시, 미취득한 경우는 RMB 30,000, 취득후 미부착한 경우는 RMB 10,000의 벌금이 각각 부과됨

-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 신청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제품검사 → ④ 공장심사 → ⑤ 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함
- 중국정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04년 4월에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 2006년 12월에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추가실시하여 CCC인증대상품목은 22개분야 159개 품목에 달함
- 강제인증 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 강제인증 면제신청을 하여 강제인증으로 면제받을 수 있음(免CCC, 免3C)
 - 연구용 또는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 제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술검토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
 - A/S 혹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
 - 기타 특수상황으로 수입되는 제품
- 주중 외국 공관 및 사절단이 공적 및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개인물품, 외국의 무상구호물품,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기타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특수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강제인증 비대상 품목임

〈표 IV-3〉 1차 강제인증품목

연번	분 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저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2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4
13	자동차 타이어	3
14	안전용 유리	3
15	농기계 제품	1
16	라텍스 제품	1
17	의료기기	7
18	소방기기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1
20	용제형 목기도료	27
21	자기타일	
22	시멘트 동결방지제	
합계		159

자료: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0

나)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실시

RoHS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어로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 1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임⁴⁹⁾

○ 6대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

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을 말함

○ 동 지침은 2003년 2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여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위해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을 제정함

○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국가질량 감독 검험검역총국, 국가환경 보호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시행기로 결정하였음

□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회수 처리와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로 활용하여 ‘오염 방지와 예방우선’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목표임

○ 제품 연구 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대체 및 감량하게 됨

○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함

□ 2007년 3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적용 대상 전자정보제품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의 ‘전자정보산업업종분류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1종(1,400여 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됨

① 전자레이더 제품

② 통신설비 제품

49) KOTRA, 국가정보(중국), 주요인증제도, 2010

- ③ 라디오 TV 설비업종 제품
- ④ 컴퓨터 관련 제품
- ⑤ 가정용 전자제품
- ⑥ 전자측량·계측기제품
- ⑦ 전자공업 전용 설비제품
- ⑧ 전자조립부품(元件)
- ⑨ 전자 핵심부품 업종(器件)
- ⑩ 전자응용제품
- ⑪ 전자 전용재료제품 등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는 중국 역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 제품 생산행위는 제외됨

〈표 IV-4〉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구 분	China RoHS 적용 여부
제품, 부품 수입시	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출시	미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수출	미적용

자료: KOTRA(2010)

〈표 IV-5〉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 준수사항

대상	관련근거	의무 준수사항
전자정보제품 설계자	관리방법 제9조	전자제품 설계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법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무독·무해 또는 해독이 적고 쉽게 분해되어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관리방법 제10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생산 및 제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 환경 보호 사용기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결정함.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 부피 및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표시 양식 및 방식은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통일화시켜 규정하며, 표시 샘플 및 방식은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및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라벨링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에 관한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 - 제품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라벨 양식 및 방식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하며, 전자정보 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제품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반드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무독·무해 및 분해가 용이하고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전자정보제품에 포장재 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며 부피 및 표면 제한으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판매자	관리방법 제15조	전자정보제품의 판매자는 반드시 제품 수입루트를 엄격히 관리하며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료: KOTRA, 2010

3) 라벨링(Labelling)

- 모든 상품은 적절히 상품에 대한 정보(라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시 해당 상품은 판매시점에 합격증이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함
- 생산품의 이름,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원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생산품의 원산지, 수입자 내지 중국내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정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규격, 생산품 rating, 주재료 및 혼합비율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상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및 만료기한이 분명하게 제공되어 있어야만 함

4) 품질 표준화(Quality Standardization)

-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 및 고시규정들에 의거하여 표준화가 관리되고 있으며, 산하 각 지역에 소재한 검험검역국(CIQ),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기관들이 상품의 검사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수입되는 상품이 법정 수입검사를 받게 되는 상품들인 경우에는 수입자는 해관과의 통관 절차진행전에 검험검역국(CIQ)에 해당제품을 신고하고 통관단(通関单)을 수령해야 함
- 검험검역국(CIQ)은 상품이 통관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에도 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임의로 상품이 표준화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나. 애로 사례

- 수출입신고시 부실(不實)신고의 사례(수량, 가격, 원산지 등)가 빈번히 발생함⁵⁰⁾
 - 부실신고는 해관감관,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함
 - 부실신고는 밀수허위신고와 유사하게 여겨지며, 고의가 없는 경우 부실신고, 주관적인 해관감관 또는 관세 포탈 등의 고의가 있는 경우 밀수허위신고에 해당됨
 - 신고내용 심사나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일반적인 처벌대상으로 해관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함
 - 해관조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해관의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가공무역기업의 비준 받지 않은 국내판매 등 법규 미준수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내용에 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함
 - 비준받지 않은 국내판매에 관하여 과태료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분류 등급 하향조정 등의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
 - 허위신고에 관하여 밀수는 입건 및 구속이 가능하고, 가공무역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원재료의 수책불평형에 관하여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해관통관에 필요한 제반구비서류 없이 공항 등으로 입국하다가 관련물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은 일시수출입 통관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나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 밀수 등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상무부 등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소규모 전시회, 상품 판촉행

50)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사 또는 학술 세미나 등에 임의로 참가하는 물품은 면세통관이 불가함

-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7개 지역 이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특구,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함⁵¹⁾

다. 업무상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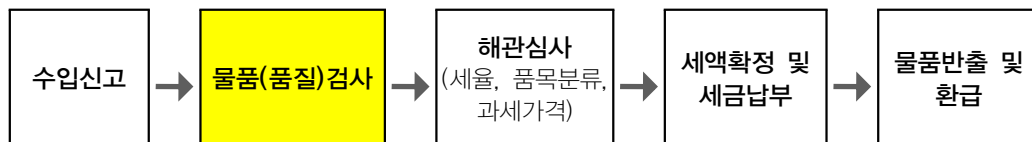
-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실한 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수출입신고 전 화물분석 및 사전 품목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입계약서 체결 또는 통관위탁협의를 시 신고부실 책임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음
- 해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편이 나으나 해관마다 견해가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함
 - 비준 받지 않은 국내판매에 관하여 금액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술적 실수 부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함
 - 수책의 불평형에 관하여는 해관은 검사를 통하여 불평형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평형에 대한 최소한 부분적으로 신고가 필요함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회 등 주관사에서 비준서, 일시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해야하고,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탁하고 우선통관하고 전시회 종료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해관과 협의해야 함
- 라벨링 규정사항을 위반시, 가산세(과태료)는 50%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제품가액의 최대 3배까지 이를 수 있고 또한 부당한 이익금은 전액 환수처리될 수 있음
 - 특정한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범죄에 해

51)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만약 판매된 제품이 품질표준화규정에 명시된 사람의 건강 내지 안전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되며, 페널티는 생산 내지 판매된 상품가액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물품(품질)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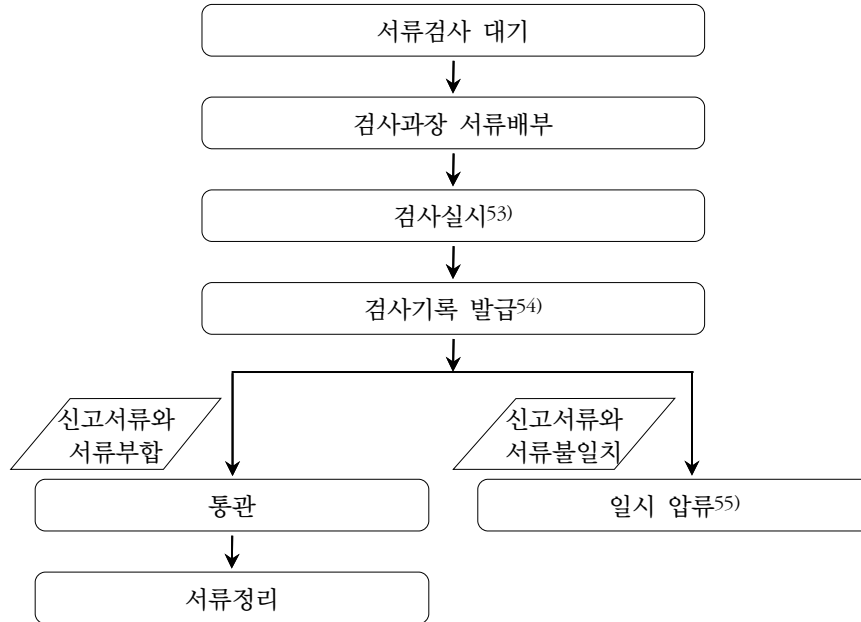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해관절차를 말함⁵²⁾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신고서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화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함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함
 - 수입화물의 HS 코드, 적용세율, 도착항 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결정함

52)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그림 IV-1] 화물검사업무 흐름도



자료: 양천호 · 김영춘(2005)

- 해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 조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함⁵⁶⁾
 -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해관감독장소에서 진행됨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함
 - 특수상황에서 해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

53) 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직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이동하거나 개봉하여야 한다.

54) 화물검사 후 화물과 신고서가 부합하면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을 출력하고 서명날인하고,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해관은 서류 반환수속을 한다.

55) 검사결과 화물과 서류가 부합하지 않으면 화물을 일시 압류하고, 관련 수속을 한다.

56)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할 수도 있으며 ‘해관의 비용징수’규정에 근거하여 해관은 검사비용을 징수함
 - 해관담당자 1인당 50위엔/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4시간 미만은 1/2로 계산하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고, 법정휴일은 평일의 배로 징수함

- 검사종료 후 해관담당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을 작성하며, 주로 검사시간, 장소 및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량, 상태 등의 검사결과를 기재함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해관검사시 작성필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해관과 화물의 송수하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임
 - 검사기록부는 해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해관은 반드시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함
 - 해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시 해관담당자의 원인으로 조성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가리킴
 -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 증명에 따라 확정함
 - 해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해관담당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해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함
 - 배상금액이 확정되면 해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하고,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해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3개월 기한이 지나면 해관은 배상하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상품검사기구 시행 ‘중류표’ 또는 ‘지방중류표’에 속하는 품목,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외자 기업이 수입할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함
-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⁵⁷⁾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함
-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의뢰할 수 있음

나. 업무상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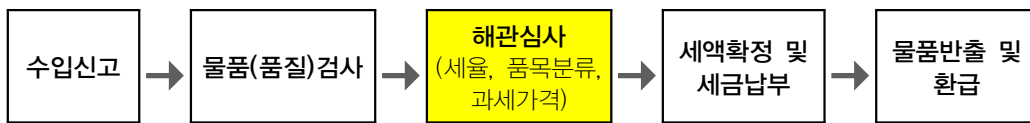
-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⁵⁸⁾
- 해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임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장 및 포장을 수행해야 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숙지한 신고화물의 정황에 대하여 검사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함
- 검사기록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며, 검사협조인은 즉시 검사기록에 서명 날인해야 하며, 만약 검사협조인이 날인하지 않으면 해관검사공무원은 검사기록에 이를 명기하고 화물이 장치된 해관감관장소의 경영인으로 하여금 서명케 하여 이를 증명하도록 함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검사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한 이의를

57)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58)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화물에 훼손부분인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해관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3. 해관심사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1) 품목분류(HS CODE) 및 사전분류제도

- 중국은 HS 협약 가입국으로서 HS CODE 분류 체계에 의거 8단위 상품분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은 수입신고시 화물상태 기준임
 - 해관에 자료요구 권한이 있어 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품목분류 전, 담보를 제공하면 화물의 사전 반출이 가능
 - 수출입 45일 전 직속해관에 신청하여 사전품목분류가 가능
 - 해관총서는 품목분류의 최종결정과 실효시 대외공포 등의 권한을 가짐

- HS CODE 분류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성(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분류 가능
 - 성(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의문이 있거나 쟁의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해관총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
 - 사전분류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인에서 '수출입상품 사전분류 결정서'를 교부
 - 분류 결정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해관에 이의신청 가능

- 결정서는 신청인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1년) 내에 수출입할 지역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省)급해관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2) 기업분류 관리제도⁵⁹⁾

- 수출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류 관리제도를 시행함
 - 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업분류 관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통관기업과 가공무역기업도 포함함
 -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해관법령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A, A, B, C, D류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함
 - AA류 및 A류 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 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 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AA류 기업은 A류 관리조건에 부합하고, A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전년도 1년간 수출입신고오류율이 3% 이하일 것(종전 A류 조건)
 - 해관의 심사검증을 거쳐 해관관리에 부합되고, 기업경영관리 및 무역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 매년 기업경영관리 상황평가보고 및 회계사무소 발행 전년도 회계심사 보고와 매 반년 수출입업무상황표를 송부하여 보고할 것
-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
 - 해관절차 종료 전에 담보제공 후 화물 우선 반출가능
 - 통관현장 검사 제외
 - 해관 전문직원파견 기업의 해관관련 문제 해결지원

59)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중 「6.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에서 요약, 발췌, 2011

- 기타 A류 기업에 대한 모든 편의 조치

- A류 기업은 B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연속 1년간 밀수죄 및 지재권 침해 수출입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
 -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50만달러 이상일 것
 - 전년도 수출입신고오류율이 5% 이하일 것
 - 연속해서 1년간 상무, 은행, 공상, 세무, 질검, 외환 등에서 불량기록이 없을 것

- A류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
 - 기업신청에 의거 내륙지신고-개항지통관 등 신속통관방식 실시
 - 기업신청에 의거 해관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과정 등에서 검사 실시
 - 근무외시간 및 공휴일 통관 절차 우선 예약
 -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 처리
 -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신고 우선처리 등

- B류 기업은 C, D류 기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최초로 등록시 분류됨
 - AA, A류 기업이 동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B류 기업으로 분류됨
 - 밀수행위 또는 50만위안 이하의 세금등을 체납한 경우, 1년내 3회이상 해관감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받은 벌금의 누계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경우, 1년 내 2회 지재권침해화물 수출입으로 해관의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C류 기업으로 분류됨
 - 밀수죄 또는 50만위안 이상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D류 기업으로 분류됨

- B류 기업에 대하여 해관은 일상적인 관리조치를 실시하며, C류 및 D류 기업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관리조치에 더하여 특별관리 조치를 실시함
 - C류 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 세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
 - 수출입화물에 대해 중점적인 실지검사 실시

- 가공무역 정산시 공장검사 실시 등
- D류 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출입화물은 모두 개장검사, 가공무역 화물등록 갱신처리 불허
 -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검사율 상향 조정 및 정산시 공장실지검사 실시
 - 경영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위탁불허
 - 기타 C류 기업에 대한 모든 해관조치 등

나. 애로 사례

- 품목분류는 세율결정, 무역관리 및 수출입통계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수출환급율 등 적용시 품목분류관련 애로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함⁶⁰⁾
 - 품목류별(HS 4단위 또는 6단위 등)의 수출환급율이 동일할 때 종전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없이 계속 적용하여 오류가 자주 발생함
-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코드가 없어 '기타', 또는 '기타의 기타' 등으로 분류시 해관과 품목분류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 특별히 게시된 부품의 세번이 없는 경우 해관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대부분 분류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손해를 입게 됨
 - 품목분류 오류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수입시 부담이 증가하게 됨
- 해관은 종전 품목분류에 따른 업무처리의 관행이 있어 정정신청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고, 종전 부실신고에 따른 소급추징 등의 행정처벌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능함
 - 부실신고에 대하여는 해관의 오류시 1년간, 기업의 오류시 3년간 소급하여 추징함
- 과세가격은 세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실성 및 정확성이 요구되고,

60)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해관의 심사 결과, 신고가격이 국내동일물품 또는 타수입물품 등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신고의 오류를 의심받게 됨

- 신고가격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국내 실제 구매자와 외국판매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의심받게 되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함
- 가격질의통지서 발송 및 신고인에게 설명자료와 관련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가공무역관련물품 내수판매시 해관의 재량적인 내부가격자료로 활용됨

□ 해관은 수입업체의 가격신고에 대해 저가신고 또는 특수관계 존재로 인한 거래가격 영향 등에 대해 해관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개정(2007년)으로 회사가 적용받는 장려류 항목에 관하여 의료용은 해당되나 생활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할 해관이 문제를 제기하여 외상투자장려류 항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함

- 해관의 해석대로 인정된다면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가산세(과태료) 추징, 기업분류 등급 하향 조정 등의 행정제재 및 향후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제조 원가 부담 증대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해관이 해외 로열티(기술사용료) 지급이 수입설비, 금형, 원재료 및 반제품, 도면 및 기술자료 중 하나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함

- 해관의 이런 해석이 인정되면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가산세(과태료) 추징 및 기업분류 등급 하향 조정 등의 행정제재가 예상되며 향후 제조원가 부담이 증대됨

□ 전자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MP3(음성)/MP4(동영상) 모두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제품을 종전에 관세율이 높고 감관조건이 까다로운 세번으로 신고 수입하였으나 관세율이 낮고 통관이 용이한 세번으로 재분류를 요청하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함

〈표 IV-6〉 품목분류 애로 사항 사례 1

	세번	관세율	감관조건
종전	8521.90(MP4)	20%	A(입경화물 통관단)
재분류	8471.30(이동형 컴퓨터)	0%	해당없음

자료: 관세청(2011)

- 통관지 해관 상품가격 정보기구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 내 가전회사에 공급하는 업체에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최초 수입가격에 비해 매월 5% 이상 꾸준히 가격하락이 지속되었고, 이는 동종업계 유사품목의 수입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이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함

- LED 패키지를 수입하여 LED모듈을 생산하고 중국 내 가전업체에 공급하는 가공무역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LED모듈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표 IV-7〉 품목분류 애로 사항 사례 2

세번	퇴세율 ¹⁾	관세율	조건
8529.90	17%	0%	해당 없음
9013.90	17%	8%	해당 없음
9405.40	17%	10%	A/B(입출경화물통관단)

주: 1) 우리나라의 환급율과 동종의 뜻임
 자료: 관세청(2011)

- 종전에는 HS 8529.90(TV부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으나 천진해관에서 HS 9405.40(조명기구) 분류 가능성을 언급함
- 그러나 당해 제품은 기능상 HS 9013.90(BLU의 부분품)에 더욱 적합함

다. 업무상 유의점

-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률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해야 함
 - 수출입전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함
 -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함
 -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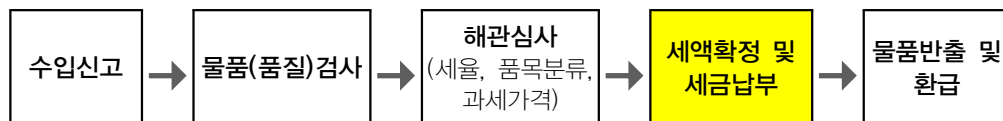
-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작성 및 개정의 취지를 파악하여 회사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함
 - 기초자료(외상투자항목 확인서, 제조공정 설명서, 영업집조, 제무제표 등)를 수집하고, 산업분석 및 제조공정 검토, 제품 및 장려류 항목 분석 등이 필요함
 - 회사의 대응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국무원 지도 문건, 상무부 답변, 협회의 설명 등)를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성을 확보함
 - 회사의 대응 논리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본격적인 문제 제기시 해관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관에 전가함으로써 회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음

- 회사의 대응논리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해관에 제출함으로써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해관 조사관에게 안심하고 비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로열티 지급과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 현지법인 재무자료(기업소득세 관련 거래양식, 송금자료 등)를 검토하고, 로열티 현황, 거래구조 및 무역방식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비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법령, WTO 기술위원회 사례, 다른 해관 심사 사례, 해관 내부 교육자료 및 과세지침)들을 전달해야 함
 - 사실관계(특수관계자 및 제3자 거래구조, 무역관련서류, 계약서, 부품조달 근거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성을 확보해야 함
-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재분류의 논거를 해관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다시 해관총서가 그 결정사항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표하도록 함
-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분류의 논거를 마련함
- 오류를 비교적 조기에 파악하여 소명한 후에 해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회사의 가격결정 원칙에 대한 해관의 인정을 얻어내어야 함
- 상품가격 정보기구를 통하여 해관의 협조를 구함(보증금 납부 및 선통관 후심사)
 - 회사의 가격결정방법(재판매가격법)을 분석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함
 - 본사 가격결정시 오류를 파악하여 해관에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함
 - 상품가격정보기구와의 회합 및 콘퍼런스콜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신뢰를 쌓음
- 다른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확실한 품목 분류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해관총서 내부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여 해관총서 차원의 종합적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
- 전문가로부터 제3의 독립적 의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전자부품의 품목분류를 관할하는 해관의 대내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확보함
 - 중국 내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HS통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함
 - 품목분류 안건이 해관총서로 전달되도록 타 부서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안건화에 성공시켜야 함
 -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해관의 견제세력에 대응하여 해관총서 및 다른 해관에서의

지지세력을 확보해야 함

4. 세액확정 및 세금납부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세금을 납부하고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사전반출이 가능함
 - 해관 착오 등으로 초과납부시 1년 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

1) 수출입 담보 제도

- 수출입 담보란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해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해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⁶¹⁾
 -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해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신고인이 담보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해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61) KOTRA(2010), 국가정보(중국)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放行: 통과나 통행을 해관에서 허락)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신고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까르네 제도⁶²) 관련화물 포함
 - 통과(放行)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해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放行)
- 단, 국가 법률, 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의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외경무부가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해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해관수속을 처리하도록

62) 일시수입통관증서. 불어의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의 두 문자를 합친 것으로,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가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한 국제적 통관증서로서 전시회, 박람회 등에 전시 또는 사용되는 일시반입물품, 촬영기, 사진기 등의 작업용구, 상품견본, 예술품 등의 일시 수입이나 보세운송에 있어 관세의 면제와 통관정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무역용어사전).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은 동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해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하고, 규정 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해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함

□ 수출입 담보 방식에는 인민폐 및 자유태환화폐, 어음, 수표, 채권 및 예금증서, 은행 혹은 비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기타 해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가 있음

- 보증금은 현금 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放行)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한 경우
- 보증금 방식 외의 모든 경우는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 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해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함

- 보증금 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함
- 보증서 방식의 경우 해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해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함

□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상황 발생시 담보 기한 내 해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부터 6개월임

나. 업무상 유의점

- 중국전자개항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비 납부를 시행하는 해관에서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전자개항을 이용하여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 고지서와 비용수납증명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지정은행에서 전자적으로 세비를 납부할 수 있음
- 해관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세대상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예금 잠정지급 정지, 재산 압류 등의 세수보전조치를 취함⁶³⁾
 - 해관은 세수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게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지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조치함
 - 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예금계좌 및 예금액수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잠정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함
-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해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잠정지급 정지한 계좌항목 중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금충당고지서를 발급하고 압류한 화물 등을 환매한 후 환매소득을 세금을 충당함
 - 환매소득의 세금충당 및 관련비용의 공제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함
-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이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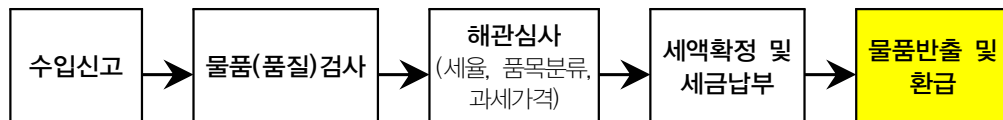
63) 「중국세관 세수보전 및 강제조치 잠정시행방법」(2009. 8. 19 공포, 2011. 8. 1 시행)

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서면통지하여 그 예금 중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 과세대상화물을 환매하여 환매소득에서 세금을 충당
- 기타 화물 또는 재산을 압류하여 환매하고 환매소득에서 세금을 충당

-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은 해관의 세수보전조치나 강제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세수보전조치나 강제조치를 부당하게 취하여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받은 경우 해관은 배상책임을 지게 됨

5. 물품반출 및 환급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통과(放行)는 통관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징수 등의 확인 후 해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이며, 해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 시킴
 - ‘해관법’ 제29조 규정에 근거, 해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인)을 찍음
- 통과(放行)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관의 현장감독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보세화물, 가공무역화물 및 감면세 혹은 추후 납부 화물은 통과된 후 해관의 사후

관리가 종료되어야 최종적으로 통관수속이 완료됨

- 해관감독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수출입화물 증명서'를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함
 - 해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 당 10위엔의 수속비를 징수함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시 신고인은 엷은 황색의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하고, 해관은 통과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 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 기관에 제출함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해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함

-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무역흑자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지향 경제성장에서 질적성장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 제품에 대한 환급율을 인하하거나 취소 조치를 취함⁶⁴⁾
 - 노동집약형 산업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제한조치로 인하여 가공무역 제한류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출 확인 후 반환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련기업들에게는 자금압박으로 작용함

-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해 2008년 8월이래 7번이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였음

64)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표 IV-8〉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시행일	환급율 인상내용
2008. 08. 01	방직품, 의류 품목 등 11% → 13%로 인상
2008. 11. 01	방직품, 완구, 가구 등 3,486개 품목 9~13% → 11~14%로 인상
2008. 12. 01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 5~13% → 9~14%로 인상
2009. 01. 01	기계전자제품 553개 품목 11~14% → 13~17%로 인상
2009. 02. 01	방직품 및 의류 품목 14% → 15%로 인상
2009. 04. 01	경공업, 강철 및 IT제품 등 3,802개 품목 5% ~ 17%로 인상
2009. 06. 01	노동집약형, 기계전자 등 2,600개 품목 5% ~ 17%로 인상

자료: 외교통상부(2010)

- 2009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과세당국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일부 고에너지 사용 및 고오염물질 배출 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취소하였음
 -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7차례 수출환급율을 상향조정한 이래 역으로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첫 조치로 향후 중국의 세수정책개혁이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나. 애로 사례

- 수출환급율 정책조정에 따라 기업의 해당수출품목 환급률이 폐지되는 경우, 동일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제분류코드와 다른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됨
 - 피해기업은 수출환급율 폐지에 따른 품목분류 정정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다. 업무상 유의점

-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관에 수출입신고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

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이나 또는 규격상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상 태로 화물을 재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사유를 설명하고 세금납부증명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관에 화물의 반송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
 - 원 수입신고서
 - 원 수입포장명세서
 - 송수하인 쌍방 간의 반송에 관한 협의서
 - 회사의 화물반송에 관한 사유서(반송원인 등 상황을 설명) 및 관련 증빙자료
 - 국세 부문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미환급 또는 추가납부 증명서
 - 기타 해관에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으로 반송수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일로부터 1년 내에 해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로부터 3일 내에 해관의 비준을 거쳐 해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함
 -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해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화물의 수취를 완료하거나 수출화물의 적재수속을 완료한 후에 만약 해관에서 발급하는 관련화물의 수출입신고서 증명서(증명연) 발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증명 수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

〈표 IV-9〉 수출입신고서 증명서(증명연) 발급

구분	발급내용
수입대금 지급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부문에서 수입대금 지급에 대한 정산확인이 필요한 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수입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입화물신고서 대금지급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함 ○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입화물신고서 대금지급 증명연 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은행과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
수출대금 회수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부문에서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정산확인이 필요한 수출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출화물신고서 대금회수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함 ○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출화물신고서 대금회수 증명연 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은행과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
수출환급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세무기관에서 수출환급 처리가 필요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출화물신고서 환급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함 ○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증명연 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국가세무기관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

자료: 관세청 ·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참고문헌

- 관세청 외,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4
- 관세청 ·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1호-20호, 2011
- 김영기,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이 전략이다』, 2004
- 양천호 · 김영춘, 『중국통관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12
- 이준진, 「중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과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
-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 2011. 2
- 종 열, 「WTO 가입 이후 중국 관세정책의 변화」,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8
-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 KOTRA, 중국 비즈니스 Q&A 88, 2003. 12
-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12
- KOTRA, 최신 중국무역 현장가이드, 2003. 6
-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1』, 2011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1. 3
-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이징, 상하이KBC), www.kotra.or.kr
-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gov.cn
- 중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com.gov.cn

중국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ww.stats.gov.cn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The People's Bank of China), www.pbc.gov.cn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customs.gov.cn

중국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Ministry of Fina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gov.cn

중국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中国自有贸易服务网/China FTA Network),
fta.mofcom.gov.cn

Invest In China(中国投资指南), www.fdi.gov.cn

부록 I. Business Tip¹⁾

1.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

- 關係는 돈보다는 정성으로 맺어진다(판시는 상호적 의무)
- 외국인의 칭찬은 중국인을 크게 고무시킨다(중국인은 적절하게 존중받기를 원함, 체면을 매우 중시, 협상파트너를 치켜 세운다)
- 집단주의가 중국을 움직인다(사회주의국가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편, 내가 우리 집단을 대표한다는 믿음을 줄 것, 우리와의 거래가 상대방 집단과 상대방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직장(과거 사회주의 시절, 현재까지 잔존)
- 관료주의와 유교는 유사점을 갖는다(계급과 서열, 충성심을 요구, 절제)
- 중국인에 대한 선입관은 위험하다(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도록 교육받음, 과거 문화혁명 때 피해)
- 중국인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내 이웃에 대해서는 위험과 불편을 감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 혹은 비협조)

1) 김영기,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이 전략이다』, 2004

- 여러 방법으로 '아니오'를 말하는 중국인들(정면에서 거절하지 않음, 고려중, 연구중, 침묵 등으로 반대의견을 표시)
 - 만약 협상과정이라면 이것들을 다시 언급하지 말고, 중재인을 통해서 일을 추진할 것 혹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

- 마지막 협상은 중재인의 몫(새로운 것, 반대의견, 부담스러운 문제 등은 중재인을 통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방안)
 - 중재인의 중요성을 인식(중재인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이 올 수 있음)

2. 중국 비즈니스 접촉

- 오래된 전통만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자신을 비하하거나 실례를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 체면, 서양인에게 너그름, 상대방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할 것)

- 훌륭한 외국인은 그들을 존중한다(중국인의 관습을 잘 아는 사람을 존중함, 충분한 경제적 가치, 적이 아닌 친구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있음)

-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낯선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않음)
 - 따라서 필요할 경우 중재인, 소개인을 내세워서 접근할 것
 - 우리 회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면 더욱 효과적

- 힘있는 주최 조직을 파트너로 선택하라(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호감을 살 필요)

- 대표단이 아닌 지도자를 중시하는 중국인
 - 직위가 높으면 더욱 좋음, 위계질서가 엄격, 행동통일이 가능

- 공손한 자세는 당신의 품위를 높인다

- 중국어로 말할 때는 느릿한 중국어를 분명하게 말함
 - 명함의 양끝을 두손으로, 정중하게, 몇초 동안 명함에 시선을 집중
 - 앉아서 회의한다면 탁자위에 명함을 올려 놓음
 - 공손한 사람을 높이 평가
 - 정치이야기는 결코 하지 말 것
- 호칭에 따라 관계가 설정된다(별명은 함부로 부르지 말 것)
- 중국인의 수준으로 환영과 환송을 행하라
- 환송과 환영이 극진할 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이 못가면 다른 사람이
라도 보낼 것

3. 중국비즈니스 회의의 시작과 끝

- 충분한 정보제공이 신뢰를 구축한다(예비지식을 요구)
- 뜻밖의 상황에 처하기 싫고 논의할 것에 대해 미리 준비(소소한 정보를 요구).
- 회의장의 의자는 서열을 구분한다(늦지않게 도착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먼
저 방에 들어감)
- 좌석배치의 중요성(제일 높은 사람이 안쪽 가운데, 중간에)
- 기본적인 원칙들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라
- 회의는 날씨, 여행 등 잡담으로 시작
 - 중요한 사업은 신뢰하는 사람과들과 진행
 - 회의에서 급히 다가가려 하지 말 것
 - 잡담에서 차차 중국측 대표자의 책임영역 파악
 - 고갯짓이나 감탄사가 나와도 이해한다는 말일 뿐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님

-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 것
 - 빠져나갈 출구를 마련해 줄 것
 - 통역은 구어체와 문어체를 혼용
 - 통역사를 보지말고 대표의 얼굴을 볼 것
-
- 회의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 대표에게 계속 협상할 사람을 선정해주길 부탁, 해주면 일단 성공
 - 지도자가 배웅하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뜻
 - 회의가 마무리될 때 오해를 막기위해 회의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것

4. 중국 비즈니스 접대와 요령

-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 대표단 방문전 미리 여러 가지 협상할 것(대표단 명단 등 모든 방문일정)
 - 대표단은 관료도 있지만 실무자들도 많음
 - 비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값이 싸고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 한층에 모두 머무르도록 배려)
 - 공항까지 나가면 고맙게 생각(차량까지 제공)
 - 대표단과 우리 측의 명단, 회사에 대한 꼼꼼한 자료제공(전문가 대기)
 - 연회는 6시 시작 8시 종료가 보통

- 중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 회사소개서를 미리 등봉, 환영깃발 등
 - 중국어를 위쪽에 표기
 - 중국음식 준비(국수 등, 집에 초대, 비디오 및 사진전문가 대동 등)

5. 중국 비즈니스 연회 에티켓

- 집으로의 초대는 반드시 응하라(식사를 포함)
 - 식사는 어디서든 약간 남길 것(다 먹으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 초대 거절시 반드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할 것(아니면 대단한 오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집에 갈땐 선물, 음식 맛있다는 평가
 - 식사 후 반 시간 내지 한 시간 후 자리를 떠야함(너무 늦어도 안 됨, 다음에는 내가 초대하겠다는 말)

- 우정이란 '소중한 의무'를 의미한다

- 중국인의 서열이 곧 당신의 지위(공손과 겸손, 서열 중요)
 - 너무 격식 없이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경계, 잘난 척하면 안됨

- 연회장에서는 주최자의 대표가 중심(초대한 곳에 대표단이 모두 함께 도착)
 - 폭신한 의자에 먼저 착석 권유
 - 주빈은 주최자의 오른 쪽(2인자는 왼쪽)
 - 준비가 다되면 테이블로 이동 후 시작
 - 문에서 가장 먼 테이블이 대체로 수석 테이블

- 모든 요리를 조금씩 모두 맛보아라
 - 여벌의 젓가락과 분배용 스푼이 있음
 - 주최자가 주빈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또 자신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됨
 - 식사 후 접시에 소량의 음식을 남겨두도록(더 먹기 힘들다는 신호이자 주최자에 대한 고마움)
 - 답례로 중국인의 접시를 채워주면 아주 예의바른 사람으로 볼 것임

- 코스의 마지막은 대부분 생선이 나오고 국수 등으로 끝내기(모든 요리마다 한 입 씩)

□ 연회는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 떨어진 음식을 줍지 말 것(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는 입을 가리고)
- 주최자의 건배에 대한 답례사는 주최자보다 길지 않게(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례사)
- 사업성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
- 중공이 아니라 중국으로 말함
-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식사 시작때 명확히 밝힐 것
- 내 잔이 비면 다른 사람 잔에 따라주면 눈치채고 따라줌
- 건배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 연회의 내용은 상식적인 것, 장시간 침묵은 피할 것(하다못해 여행이야기라도)

□ 연회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은 연회(배불리 먹었다는 표시는 예의)

- 즐거운 식사였음을 표시, 식사완료는 주최자가 표시
- 연회에는 연회로 답할 것
-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는 상대방에게 문의
- 지도자급 상급관리는 단 한명만 초대할 것(중재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고위 인사를 선택)
- 연회장소는 호텔 등(1인당 비용, 음식이 남을만큼-1명의 음식비로 2명분을 산정)
- 술과 음료수를 미리 결정, 담배제공
- 식당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물으면 상세히 대답(서비스를 그에 걸맞게 하려하므로, 운전자에 대한 배려-최근에는 현금지불 추세임)

6. 중국 비즈니스 키워드

- 선물 : 좋은 선물과 나쁜 선물을 구별하라
 - 선물은 아주 필요하며 일상적(대표에게 큰 선물, 모든 참석자에게 조그마한 것)
 - 회의 전 미리 준비, 적당한 시간에 예의 바르게 증정
 - 한국의 전통 예술품이나 특산품 정도(남자에게는 담배나 술, 여자에게 간략한 화장품 정도, 방문시 찍은 사진첩, 기념품에는 회사로고 있으면 좋음)
 - 시계, 녹색모자, 흰색은 하지 말 것
 -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거절해도 계속 선물을 건네야 함(조직을 위한 선물은 식사 후에)

- 판시 :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 회사의 조직도를 잊고 좋은 관계를 맺을 것(판시관리가 중요)
 - 일자리 제공,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골프여행이 좋음
 - 재산, 권력, 사회적 위상을 중시하는 경향
 - 호의를 호의로 대응
 - 소송은 별로 이익이 없음
 - 중국인은 도움을 주길 원함(자기 체면유지와 다음 기회를 위해)
 - 친구관계를 만들 것

- 체면 : 상술의 기본적인 원칙
 - 체면은 중국인의 모든 것(초대거절은 체면손상으로 여김)
 -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면을 깎지 말 것
 - 자제력을 잃지 말 것(복수를 할 수 있음)
 - 체면은 진실보다 중요함(상대방 체면유지를 위해 우리는 겸손하게 보일 것)
 - 상관에게 당사자를 칭찬해 줌
 - 체면유지를 위해 비싼 음식 대접하고 비싼 물건을 구입함

- 관료주의 : 맞서지 말고 물러서라
 - 관료라는 조직의 힘
 - 완강한 관료주의는 부정부패를 유발
 - 한 번 내려진 명령은 체면 때문에 절대 취소하지 않음
 - 다른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 혹은 상급자와 연결하여 설득
 - 중재인을 통한 조용한 해결
 - 중국에서 중국인과 공평한 관계는 없음
 - 직접 혹은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해결
 - 대립에서 같이 이기는 방법을 찾을 것
 - 명령계통의 고위직에 호소, 혹은 좋은 선물을 준비
 - 교통순경에게도 대항하지 말고 존경, 아부할 것
 - 정중하게 꼬치꼬치 질문, 비난은 금물, 노골적인 말을 피할 것
 - 항상 출구를 열어둘 것
 - 안좋은 일을 전할 때는 항상 중재인을 통할 것
 - 승인, 허락보다는 용서에 너그러움
 - 효과적인 뒷문사용
 - 확실한 선물 제공

부록 II. 주요 유관 기관 정보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http://www.koreanembassy.cn/
대표전화	(86-10) 8531-0700
□ 대사관	
주소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 8531-0700 근무시간 외 : (86-10) 8531-0704 핸드폰 : (86)136-0103-0178
팩스번호	(86-10) 8531-0726
□ 영사부	
주소	10060, 中國 北京市 朝陽區 東直門外大街 亮馬河南路14號 塔園外交辦公大樓
이메일	chinaconsul@mofat.go.kr
전화번호	(86-10) 6532-6774 / 6775 근무시간 외 : (86) 136-0103-0178 사건·사고 핸드폰 : (86) 136-0111-7474
팩스번호	(86-10) 6532-6778 / 6723
* 각종 사증발급 및 사증제도 개선 / 여권, 병무, 영사확인, 호적 등 민원업무 / 사건·사고 처리 / 교민관련 단체지원 등	
□ 경제부	
이메일	chinaeconomy@mofat.go.kr
전화번호	(86-10) 8531-0815
* 한·중 양국 정부간 경제분야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및 對中 시장개척 지원활동 /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유치 활동 / 중국 각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증진 및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	

■ 관세청 중국 관세관	
□ 베이징	
주소	中國 北京市 朝陽區 東方 東路 20號 1等書記官 金政 No.20 Dongfangdong 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8531-0700(내선 0844, 0864)
팩스번호	86-10-8531-0869
이메일	pie7811@naver.com
□ 상하이	
주소	中國 上海市 萬山路 60號 韓國 總領事館(우편번호 : 200-336)領事 黃忠祚
전화번호	86-21-6295-2592, 5000
팩스번호	86-21-6295-5191
이메일	hcj57@hanmail.net
■ KOTRA 베이징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china.org
주소	北京市 朝陽區 38現代汽車大廈 2201號(100027)
전화번호	(86-10) 6410-6162
팩스번호	(86-10) 6505-2310, 6410-6090
이메일	pekktc@kotra.or.kr
■ KOTRA 상하이 무역관(KBC)	
주소	中國 上海市 興義路 8號 上海萬都中心 3110 室(200336) KOTRA(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上海代表處 KOTRA Shanghai(KOTRA China Head Office),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전화번호	86-21-5108-8771(2)
팩스번호	86-21-6219-6015, 6236-8211
이메일	shanghai@kotra.or.kr

■ KOTRA 광저우 무역관(KBC)	
주소	中國廣州市天河區 天河路 208號 天河城大廈 29樓04-07A 號 (郵編 : 510620)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전화번호	(86-20) 2208-1600
팩스번호	(86-20) 2208-1636
이메일	canton@kotra.or.kr

■ 중국 상무부	
웹페이지	www.mofcom.gov.cn
주소	No.2 Dong Chang'an Avenue, Beijing China(100731)
전화번호	86-10-51651200-612/613/623
팩스번호	86-10-65677512

■ 중국 해관총서	
웹페이지	www.customs.gov.cn
주소	No.6 Jianguomennei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65194114, 86-10-65222882
이메일	qwxcd@customs.gov.cn

■ 중국 국제상회	
웹페이지	www.ccpit.org
주소	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1号
전화번호	86-10-88075000
팩스번호	86-10-68011370

■ 중국 한국 상회(코참 차이나)	
웹페이지	china.korcham.net
이메일	china@korcham.net
전화번호	86-10-84539755/8

■ 상하이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웹페이지	www.cpitsh.org
전화번호	86-21-53060228
팩스번호	86-21-53837081
이메일	webmaster@cpitsh.org

부록 Ⅲ.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²⁾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임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관세선의 출입(이하 '수출입')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기구다.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 기관, 화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물품(이하 '출입국 운수기관, 화물, 물품')을 관리감독하고, 관세와 기타세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세 관업무 관련통계를 관리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조직) 해관총서는 국무원 산하 기구로서 전국세관을 관장한다. 국가는 대외에 개방한 항구와 세관의 관리감독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의 관할은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며, 해관총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밀수수사 전담기구) 국가는 해관총서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안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 밀수단속 경찰을 배치하고, 관할하는 밀수범죄사건의 수사, 구류, 체포 집행, 심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세관밀수범죄수사공안기구(이하 밀수수사전담기구)의 수사, 구류, 체포집행, 심리의 직무수행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밀수수사전담기구는 국가관련규정에

2) 본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은 2001.1.1일부터 시행, 공포되는 법률임

의거하여 산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산하기구는 관할하는 밀수범죄사건 처리시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해야 한다. 지방각급공안기관은 밀수수사전담기구가 법에 의거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밀수단속 세관전담) 국가는 밀수단속과 관련 합동단속, 통일처리, 종합관리의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 세관은 밀수단속기구의 조직, 협조,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각 관령행정집행부서에서 적발한 밀수사건을 행정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밀수수사전담기구, 지방공안기구에 이송하여 사건관할 분담과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6조(권리) 세관은 아래에 열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및 화물과 물품을 검사하며 이 법 또는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2) 관세선 출입자의 증명서를 검열하며, 본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위반 혐의자의 심문조사 및 그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 (3)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 기록, 문서, 업무서신과 전보, 녹음 및 영상기록물과 기타 자료의 검열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본법 또는 기타 유관 법률이나 법규위반에 연루된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및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 (4) 세관 관리감독 구역과 세관 부근 연해지역 및 변경의 규정된 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도구와 밀수화물과 물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며, 밀수혐의자의 신변검사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기관과 화물과 물품 및 밀수범죄 혐의자는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구류할 수 있다. 밀수범죄혐의자에 대한 구류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감독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이외에서 세관이 밀수사건을 조사시, 관련 당사자의 입회하에 밀수혐의 운수기관과 혐의자의 거주지이외의 밀수화물과 물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해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가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 현장 증인이 있는 상황하에서 검사할 수 있다. 그 중 밀수혐의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세관부근연해 변경 규정구역의 범위는 해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유관 성급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밀수사건 조사시,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사건 관련 업체와 혐의자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의 예금, 송금을 조회할 수 있다.
- (6)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또는 개인이 세관감독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세관은 계속하여 세관관할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다.
- (7) 세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규칙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8)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관관련 기타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세관독립) 각지방정부 및 관련부서는 세관의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지지해야 하며, 불법으로 세관의 법집행에 간섭할 수 없다.

제8조(운수기관)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은 세관 지정장소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세관지정장소외의 지역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본법 규정에 의거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세의무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통관대행업체 또는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가 통관 및 납세 수속의 처리를 맡는다. 출입국시 물품의 소유자는 자신이 납세통관 수속을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납세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10조(통관대행)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물품 발송·수하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세관에 위탁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법의 위탁인에 관한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화물 발송·수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화물발송·수하인과 동등한 법률책임을 진다. 위탁인이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통관사항의 진실상황을 제공하고, 통관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통관 대행의 등록) 수출입화물의 발송인·수하인 및 통관대행업체가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통관신고인은 법에 의해 통관신고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세관에 미등록된 기업과 통관신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통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세관원의 임무 및 유관기관 협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업체와 개인은 사실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직무를 방해할 수 없다. 세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폭력저항을 받을 때에는 유관업무를 집행하는 공안기관이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제도) 세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제도를 제정·시행한다. 임의의 업체나 개인은 모두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세관은 본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하고 조사에 협조한 유공업체나 개인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세관은 정보제공자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운수기관

제14조(운수기관의 출입국)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지정장소에 도착하거나

또는 출발하고자 할 때 운수기관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신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지정장소에 정박하고 있는 출입운수기관은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발할 수 없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 지정장소에서 다른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세관관리감독상의 요구에 따라 세관수속을 받아야 한다.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고는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제15조(운수기관의 운행) 입국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신고를 하기 이전 또는 출국하는 운수기관이 통관 절차를 밟은 후 국경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교통주관 부서가 규정한 노선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지정한다.

제16조(운수기관의 통보의무) 운수기관 책임자 또는 관련 운수업체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시간·체류지점·체류기간·장소변경 및 화물과 물품의 선적 및 하역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운수기관에 대한 감시) 운수기관에의 화물이나 물건의 선적이나 하역 또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여행객의 승하선은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나 물품의 선적이나 하역이 완료되면 운수기관 책임자는 실제선적이나 하역상황이 기록된 인수인계증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에 승하선 하는 사람이 물품을 휴대한 경우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운수기관의 입회 및 협조의무) 세관이 운수기관을 검사할 때에는 운수기관 책임자는 그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실·선실·승강구를 개방하여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는 밀수화물이나 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개봉하여야 하며 화물이나 비품을 세관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세관은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운수기관에 동승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운수기관 책임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운수기관의 타용도 사용 금지) 입국하는 대외운수기관과 출국하는 국내운수기관은 세관수속을 마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운수기관의 자격변경) 출입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의 승객이나 화물운수를 병행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 운수기관이 국내운송으로 자격변경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연해운송선박 등의 제한) 연해운송선박, 어선과 해상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품을 운반·환적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제22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정박등)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부득이 정박, 투하, 또는 방치하거나, 화물이나 물품의 하역을 한 경우, 운송기관 책임자는 즉시 인근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출입화물

제23조(수출입화물의 감시)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출입화물의 신고)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리방

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은 수취인이 운수기관의 도착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위의 규정기간을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5조(신고서 형식) 수출입화물의 세관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서면신고서와 EDI통관신고서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26조(신고서 수정) 세관통관수속 접수 후 통관서류 및 그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 동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다.

제27조(견본채취)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세관 동의를 거쳐 세관신고 전에 화물을 점검 또는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검역해야 하는 화물은 검역합격 후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제28조(수출입화물의 검사)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화물검사시 화주는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화주는 화물의 운반·개봉 및 화물 재포장의 책임을 진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개봉하여 검사하거나 재검사 또는 견본채취를 할 수 있다. 화주의 신청과 해관총서의 승인을 거쳐 당해 수출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수출입화물의 통관조건)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화물은 화물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세금납부를 완료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이 서명날인하여 통관시킨다.

제30조(수출입화물의 매각)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운수기관의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세관이 인수하여 매각처리 한다. 판

매금액 중 운송료, 하역료, 보관료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화물판매일로부터 1년 내에 화물 수취인의 신청을 거쳐 반환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처리조치 중 수입규제 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득한 화물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급하며, 규정기한을 넘겨도 신청이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명백히 잘못 하역되었거나 과다 하역된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서 원(原)운수기관의 책임자· 화물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송하거나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기간을 넘겨도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 세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기 두 가지 규정에 열거한 화물중 장기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관이 화물 상태에 따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다. 화주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수입화물은 세관이 반출하여 매각처리 한다. 매각한 대금은 운송· 선적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한다.

제31조(일시 수출입화물의 재반출입) 세관의 승인을 거쳐 일시수입 또는 일시 수출한 화물은 6개월 내에 다시 반출 또는 반입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세관의 동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세화물 보관 등) 보세화물의 보관· 가공· 장치 전시, 운수, 위탁판매업무와 면세점의 경영은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세관승인을 거쳐야 하며 또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보세화물의 양도, 이전 및 보세구역의 출입은 세관에 관련수속을 마쳐야 하며 세관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가공무역기업의 관리감독)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허가서와 가공무역계약을 소지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가공무역 제품 단위당 자재 소모량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 가공무역제품은 규정기간 내에 재반출하여야 한다. 그중 사용한 수입자재가 보세 상태일 경우 세관에서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먼저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세관에 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가공무역보세수입 자재 또는 제품이 어떤 사유로 국내로 판매될 경우 세관은 국내판매 허가문서에 근거

하여 보세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국가에서 수입 규제 규정이 있을 경우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보세구역 관리) 국무원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보세구 등 세관특수관리감독 지역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35조(수출입화물의 통관세관) 수입화물은 화물수취인이 화물의 반입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화물은 송화인이 화물의 반출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의 신청 및 세관의 승인을 거쳐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도착지에서 세관수속을 하거나,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출발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한 화물의 타세관이관운송은 세관관리감독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할 수 있다. 케이블이나 송수관 또는 기타 특수방식의 수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은 경영업체가 정기적으로 지정된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통과화물) 과경, 전운과 통운화물은 운수기관 책임자가 반입지 세관에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규정된 기간 내에 운송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경, 전운, 통과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개장 등의 제한) 세관이 관리감독 하는 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관 또는 기업도 개봉·인출·인도·발송·교환·개장·저당·양도 또는 표기변경을 할 수 없다. 세관이 설치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인민법원판결, 판정 또는 관련 행정집행 부서에서 세관관리감독화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세관에 수속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8조(화물의 보관) 세관이 보관·관리감독하는 화물의 창고·장소의 설명인은 세관 등록을 거쳐 세관규정에 따라서 보관, 반출입 및 보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세관관리

감독 구역 이외의 곳에 세관관리감독 화물을 보관할 때에는 세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 또는 세관관리감독 화물 보관기간에 세관감독화물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세관감독화물에 대해 보관의무가 있는 자는 상응한 납세의무와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39조(특수거래에 대한 감시규정의 제정) 국경출입 컨테이너의 관리감독방법, 수출입 화물과 침물선의 인양에 관한 관리감독 방법,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 방법 및 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국경출입 화물의 관리감독 방법은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가 국무원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0조(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수출입) 국가에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 수출입 화물, 물품일 경우에는 세관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 결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감독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관련 원산지 규칙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42조(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는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상품분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검사(化驗) 및 분석(檢驗) 기구를 둘 수 있는 한편 세관이 인정하는 검사·분석결과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제43조(사전회시제도) 세관은 대외무역업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의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화물에 대해 사전에 상품분류 등 행정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같은 상품분류 행정 결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은 결정한

상품분류 등 행정결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44조(지적재산권보호)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 해야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출입화물 발송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규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관련 지적재산권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합법사용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사후검사)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통관일로부터 3년 내 또는 보세화물, 세금을 감면한 수출입화물의 세관관리감독기한내 및 그후 3년 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관련되는 기업, 단체의 회계장부, 회계증표,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와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장 휴대품 및 우편화물

제46조(개인휴대품 관리) 개인이 휴대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물품, 우편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자용에 합리적인 수량에 한하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개인휴대품 신고)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의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시봉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함부로 개봉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제48조(우편물 등 검사) 국경을 출입하는 우편행낭의 선적과 하역, 환적운송과 국경의 통과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은 세관에 우편물 행선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체국은 국제우편행낭의 개봉 및 봉인발송 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은 시간에 맞추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우편물의 교부) 우편운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거쳐 통관된 후에 관련업체는 배달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일시면세품의 반출입) 세관등록을 거쳐서 일시면세반입 또는 반출을 허가받은 물품은 본인이 다시 휴대하여 반출 또는 반입하여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당해 일시 면세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

제51조(무주물 등의 처리) 반출입 물품의 소유자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 세관규정기간 내에 통관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확인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물품 및 배달할 방법이 없거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국경출입우편물품은 세관이 본법 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외교관물품) 외교특권과 면제를 받는 외국기구 또는 직원의 공무용품 또는 자용물품의 반출입은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관 세

제53조(수출입세칙)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이나 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수출입화물의 화주 및 국경출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다.

제55조(과세가격 결정)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국경 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수 및 관련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하며,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국경 내 수출지점까지 운송하여 적재하기 전에 발생한 운수 및 그 관련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나 그 중 포함된 수출관세는 공제한다. 반출입 휴대품 등 물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56조(감면세) 아래에 열거한 수출입화물 및 국경출입물품은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한다.

-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견본물품
- (2)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 (3) 세관통관 전에 변질 또는 손상을 당한 화물
- (4) 규정 수량이나 금액 이내의 물품
- (5) 법률로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기타 화물 또는 물품
-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화물 또는 물품

제57조(특정물품 감면세)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할 수 있다. 특정감세 또는 면세의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세 또는 감세하여 수입한 화물은 단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로 사용하고 세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치거나 또는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8조(임시감면세 결정) 본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규정범위이외의 관세의 임시 감세 또는 면세는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제59조(과세납부의 일시유예) 세관승인을 거쳐 일시수입 또는 일시 수출한 화물 및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보세화물은 화주가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관세납부 일시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60조(납세기일)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날로

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을 넘긴 것은 세관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납세인, 보증인이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직속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아래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1)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담보인 또는 납세의무자의 예금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2) 세금납부 대상화물을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3) 세금에 상당한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 매각소득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관이 강제조치를 채택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휴대품 등 물품의 국경출입 시 납세의무자는 물품통관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세수보전)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 내에 세금납부 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하려는 기미가 뚜렷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세관은 아래에 열거한 세수보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1)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해야 할 세금에 상당한 예금을 일시 지불 정지토록 조치를 취한다.
- (2)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상응한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재산을 억류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속세관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일시 지불 정지한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억류한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세수보전조치가 부당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관이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

이 손실을 당했을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관세 등의 추징) 수출입화물, 반출입물품이 통관된 후 세관이 부족세액이나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일 또는 화물, 물품의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조성된 부족세액이나 누락된 세금은 세관이 3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제63조(관세 등의 환급) 세관이 과다 징수한 세금은 세관에서 발견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납세쟁의) 납세의무자와 세관 간 납세에 대한 이의 발생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징수관리)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대행하는 세금의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납세담보

제66조(담보제공) 화물의 상품분류 확정, 가격평가와 통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기타 통관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통관시킨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세관담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가 수출입화물, 반출입 물품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어 허가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나 제공하지 못할 경우나 법률, 행정법규에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 세관은 담보 후 통관을 해줄 수 없다.

제67조(담보인) 법률규정상 담보인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세관업무와 관련 담보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국민은 담보인으로 될 수 있다.

제68조(담보종류) 보증인은 아래 재산,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인민폐, 태환가능한 화폐
- (2) 환어음, 은행 어음, 수표, 채권, 예금통장
- (3)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보증서
- (4)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기타 재산, 권리

제69조(담보인) 담보인은 담보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피 담보인의 통관수속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0조(담보관리 방법) 세관업무와 관련된 담보에 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업무감독

제71조(법률준수) 세관 직무 수행은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적 권한과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72조(준법의무) 세관직원은 공평하게 법을 수행하고, 청렴 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히 하고 선진적으로 서비스하며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밀수를 은닉 또는 용인하거나 또는 타인과 결탁하여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2) 불법으로 타인의 신변자유를 제한하거나, 신변·거주지 또는 장소를 검사하는 행위, 불법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을 검사 억류하는 행위
- (3)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
- (4)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5)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세관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6) 직권을 남용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관리감독, 검사를 지연하는 행위
- (7) 몰수한 밀수 화물이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사로이 배분 또는 점용하는 행위
- (8) 영리성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참여하는 행위
- (9)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상 월권행위
- (10) 기타 위법 행위

제73조(세관직원의 채용) 세관은 법집행 업무상 수요에 근거하여 직원을 보강하고, 세관직원이 우수한 정치, 업무적 소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은 법률과 관련지식에 전문 정통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전문직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직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심사하며,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해야 한다. 세관은 계획적으로 직원의 사상, 법제, 세관업무훈련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직원은 정기적으로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74조(세관장의 정기인사 및 평가) 해관총서는 세관장 정기전보인사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상급 세관에 소관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사실대로 직무수행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정기적으로 직속세관 세관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직속세관은 정기적으로 산하세관 세관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75조(업무의 관리·감독) 세관 및 그 직원의 행정업무수행은 법에 의거하여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고 밀수단속경찰의 수사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76조(회계감사)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회계감독을 하며, 세관에서 처리한 국제재정수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77조(상하세관 감독) 상급세관은 하급세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감독해야 한다. 상급세관이 하급세관에서 처리하거나 결정한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직원관리감독)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감독제도를 수립하며,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 준수상황에 대해 감독·감사해야 한다.

제79조(사무분장 및 견제) 세관내부의 신고서류심사, 검사, 통관, 사후심사와 조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업무상 상호 분리와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제80조(세관의 부당행위 고소) 임의의 기업이나 개인은 세관 및 그 직원의 위법행위와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고소하거나 고발을 받은 권한있는 기관은 법에 의거 담당업무별로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 기관과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1조(조사의 기피) 세관직원은 위법사건을 조사처리할 경우,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당면했을 경우 조사를 기피해야 한다.

-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직계 친척일 경우
- (2) 본인 또는 그 직계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본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8장 벌 칙

제82조(밀수죄) 본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관의 관리감독을 일탈

하거나, 납부할세액을 탈세하거나 국가의 수출입과 관련된 금지성 또는 제한성 관리를 벗어난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밀수에 해당된다.

- (1)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물품 또는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화물, 물품을 운송·휴대·우송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
- (2) 세관 승인 받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관련허가를 위한 검사·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화물, 특정면세화물 그리고 기타해관감독관리 화물, 물품, 관세선을 통과하는 운송기관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 (3) 세관의 관리감독을 일탈하여 밀수에 가담하는 기타 행위

상기에 열거한 행위가 있으나 밀수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세관에서 밀수화물, 물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혹은 수 차례 밀수를 하는 데 사용한 화물, 물품 그리고 전문적으로 혹은 수 차례 밀수를 방조하는 데 사용한 운송기관은 몰수하고,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하였던 특별설비는 해체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몰수한다.

상기 열거한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3조(밀수행위)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본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 (1) 밀수범으로부터 밀수 수입한 화물,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
- (2) 연근해, 영해, 河界, 湖界에서 선박 및 탑승자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구매·판매하는 행위,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합법적인 증거가 없이 운송·구매·판매하는 행위

제84조(밀수공모자처벌) 세관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고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대출, 자금, 구좌, 영수증, 증명, 세관서류를 제공하거나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운수, 보관, 우송 또는 기타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제85조(과다반입)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개인물품을 휴대·우송하여 국경을 출입시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86조(법규위반)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 (1) 운수기관이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통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 (2)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도착시간·체류장소 혹은 환적장소를 세관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수출입화물, 물품, 혹은 과경, 전운 및 통운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 규정에 따라 세관의 국경출입 운수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의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 (5)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건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혹은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객을 승선 또는 하선한 경우
- (6)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체류한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발하는 경우
- (7)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한 지점으로부터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 세관수속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고 또한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임의로 국경 밖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국경 내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 (8)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내 운수의 이중 영업을 하거나 혹은 국내운수로 전환한 경우
- (9) 불가항력에 인하여 국경을 출입한 선박과 항공기가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부득이 정박, 착륙 혹은 국내에 화물이나 물품을 방치하거나 하역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세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관이 관리감독 하는 화물을 임의로 개봉, 채취,

교부, 운송, 교환, 개장, 저장 혹은 양도하는 경우

- (11) 임의로 세관의 봉인표지를 개봉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12) 세관 관리감독하에 있는 화물의 운수, 저장, 가공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관련 화물의 멸실 또는 화물관련 기록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13) 세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87조(업무의 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세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본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경고 또는 종사하는 업무를 일시 정지, 나아가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세관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통관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통관업무에 종사할 경우 세관은 즉시 이를 중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제89조(월권행위에 대한 처벌) 통관기업, 통관원이 불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통관하거나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통관활동을 할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가하며, 영업허가를 일시 정지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0조(뇌물공여에 대한 처벌) 수출화물의 발송인, 수입화물의 수취인, 통관기업, 통관원이 세관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세관은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종사자격을 취소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새로운 통관기업으로 등록하거나 통관업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1조(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화물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침권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범법화물 및 손상·부패화물에 대한 처리)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억류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에 대하여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세관에서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험품이거나 신선물품, 부패용이한 물품, 실효 용이한 물품 등 장기간 보존하기 어려운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사전에 매각하도록 신청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은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한 소득대금은 세관에서 보존하고 그 소유인에게 통지한다. 인민법원 및 세관이 몰수를 판결한 밀수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에 사용한 운수기관, 특수설비는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매각으로 인한 소득과 세관에서 결정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입한다.

제93조(억류화물 등 처리)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재심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은 담보금에서 공제하거나 억류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을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 납부하며 또한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94조(손실물 배상) 세관이 수출입화물, 물품을 검사시, 피 검사 화물, 물품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95조(위법억류 화물배상) 세관이 화물, 물품, 운수기관을 위법 억류하여 당사자의 합법 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세관직원의 처벌) 세관직원이 본법 제72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7조(징수업무에 대한 책임) 세관의 징수업무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회계감사기관 및 관련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

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비밀유지) 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인, 고발인, 정보제공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9조(조사 회피 위반에 대한 처분) 세관직원이 위법사건 조사처리시 본법 규정에 따라 조사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장 부 칙

제100조(용어의 정의) 본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법에서 직속세관이라함은 직접 해관총서의 지시를 받고 일정지역범위내의 세관업무를 담당·관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산하세관이라함은 직속세관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세관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국경출입운수기관이라함은 사람, 화물, 물품을 적재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각종 선박, 차량, 항공기 및 화물을 운반하는 가축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과경(過境), 전운(轉運) 및 통운(通運)화물이라함은 국경 밖으로부터 운반하기 시작하여 중국국경 내를 통과하여 계속해서 국경 외로 운반하는 화물이다. 그 중 과경화물이라함은 국경 내의 육로를 통과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전운화물이라함은 세관설치지점에서 다른 운수기관으로 환적은 하였으나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하여 운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통운화물이라함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입항후 원래 적재된 상태로 국경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세관관리감독화물이라함은 본법 제23조 열거한 수출입화물, 과경, 전운, 통운화물 및 특별감세·면세화물, 그리고 일시 수출입화물, 보세화물과 기타 세관

수속이 끝나지 않은 국경출입 화물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보세화물이라함은 세관승인을 받고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와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다시 운송하여 국경을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세관관리감독구역이라함은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항구, 역, 공항, 국가간 경계의 지역, 국제우편, 교환국(교환역)과 기타 세관관리감독 업무와 관련된 장소 및 세관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국경을 출입하는 지점을 말한다.

제101조(특정지역화물의 관리감독) 경제특구 등 특정지구와 국내의 기타 지역 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의 관리감독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2조(시행) 본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7월1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부록 IV. 중국 수출입 관세 조례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mport and Export Duties)³⁾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ese Regulations ar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ustom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ustoms Law)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policy of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foreign trade and the national economy.

Article 2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ustom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collect import or export duties on all goods permitt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be imported into or ex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and all inward articles.

Article 3

The State Council shall formulate the Customs Import and Export Tariff of the

3) Adopted at the 26th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 October 29, 2003, promulgated by Decree No. 392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November 23, 2003, and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iff) and the Flat Duty Rates on Inward Articl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lat Duty Rates on Inward Articles), providing for tariff items, tariff headings and duty rates, which constitute component parts of these Regulations.

Article 4

The State Council shall establish the Tariff Commission, which is responsible for making adjustment to and interpretation of tariff items, tariff headings and duty rates in the Tariff and the Flat Duty Rates on Inward Articles and implementing such adjustment and interpretation after they are submitted to and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determining the goods subject to temporary duty rates and the rates and duration thereof; determining tariff quota rates; determining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duty, retaliatory duty or other tariff measures;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duty rate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nd performing othe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prescribed by the State Council.

Article 5

The consignee of import goods, the consignor of export goods and the owner of inward articles are duty payers.

Article 6

The Customs and staff members thereof shall fulfill the responsibility of duty col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authority and procedure, safeguard State interests, protect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duty payers, and receive supervision according to law.

Article 7

A duty payer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Customs to keep confidential its

commercial secrets, and the Customs shall keep confidential such secrets for the duty payer according to law.

Article 8

The Custom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reward units and individuals that inform against violations of these Regulations or provide assistance in investigating such violations, and be responsible for keeping secrets concerned.

Chapter II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Duty Rates on Import and Export Goods

Article 9

Duty rates on import goods are composed of most-favored-nation duty rates, conventional duty rates, special preferential duty rates, general duty rates, tariff quota duty rates, etc. Temporary duty rates may apply to import goods within a specific time limit. Duty rates on export goods are designed to collect export duty. Temporary duty rates may apply to export goods within a specific time limit.

Article 10

The most-favored-nation duty rates shall apply to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at are subject to the common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clause,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countries or regions with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ncluded a bilateral trade agreement for reciprocally granting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nventional duty rates shall apply to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countries or regions with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ncluded a regional trade

agreement that comprises preferential duty clauses.

The special preferential duty rates shall apply to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countries or regions with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ncluded a trade agreement that comprises special preferential duty clauses.

The general duty rates shall apply to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countries or region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or to the import goods of undetermined origins.

Article 11

Where there are temporary duty rates on import goods to which the most-favored-nation duty rates are applicable, such temporary duty rates shall apply; where there are temporary duty rates on import goods to which the conventional duty rates or preferential duty rates are applicable, the lower duty rates shall apply; temporary duty rates shall not apply to import goods to which the general duty rates are applicable.

Where there are temporary duty rates on export goods to which the export duty rates are applicable, such temporary duty rates shall apply.

Article 12

Where the quantity of import goods that are subject to tariff quota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e is within the tariff quota, the tariff quota duty rates shall apply; if such quantity exceeds the tariff quota, the application of the duty rate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r 11 of these Regulations.

Article 13

Where anti-dumping, countervailing or safeguard measures are adopted on import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application of duty rates of such import goods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nti-Dumping,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s.

Article 14

Where any country or region, in viol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or other relevant agreements that it concludes or accedes to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ilaterally adopts measures affecting normal trade such as imposition of prohibition or restriction or surcharge of duties in the trad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taliatory duty may be imposed on import goods originated from such country or region and retaliatory duty rates may apply.

The goods and countries subject to retaliatory duty, as well as the rates, duration and collection measures of retaliatory duty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Tariff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Article 15

For any import or export goods, the duty rates implemented on the date when the Customs accepts the declaration for import or export of such goods shall apply.

Where, upon verification and approval of the Customs, the declaration is made prior to entry of import goods, the duty rates implemented on the date of declaration of the means of transport carrying such goods for entry shall apply.

The date for application of the duty rates on goods for the transport under Customs transit shall be separately provided for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16

Where duty needs to be paid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duty rates implemented on the date when the Customs accepts the declaration for duty payment shall apply:

- (1) where bonded goods are, with approval, not to be re-trans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 (2) where goods subject to duty reduction or exemption are, with approval, to be transferred or diverted to other purposes;
- (3) where goods permitted to temporarily enter or leave the Customs territory are, with approval, not to be re-transported out of or into the Customs territory;
- (4) where the duty on import goods on lease is to be paid by installments.

Article 17

In the recovery or refund of duties on import or export goods, the duty rates to appl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r 16 of these Regulations.

Where there is a need to pursue the payment of duties unpaid due to the duty payer's violation of relevant provisions, the duty rates implemented on the date when such violation occurs shall apply; if it is impossible to ascertain the date when such violation occurs, the duty rates implemented on the date when the Customs finds such violation shall apply.

Chapter III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of Import and Export Goods

Article 18

The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on the basis of the transaction value which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s well as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prior to unloading of such good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 goods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 goods by the buyer when sold by the seller for export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 and 20 of these Regulations, including the price paid directly and indirectly.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 good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 (1) there are no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by the buyer other than restrictions which are imposed by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strictions which limit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the goods may be resold, or restrictions which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 (2) the transaction value of such goods is not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such as tie-in sale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 (3) no part of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 goods by the buyer will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or appropriate adjustment can be made to the proceeds, if an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 and 20 of these Regulations;
- (4) the buyer and seller are not related or, although the buyer and seller are related, such relationship does not affect the transaction value.

Article 19

The following costs shall be added to the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 (1) commissions and brokerage incurred by the buyer, except buying commissions;
- (2) the cost of containers treated as being one for customs purposes with the goods in question, which is incurred by the buyer;
- (3) the cost of packing incurred by the buyer, whether for labor or materials;
- (4)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such goods as materials, components, parts, tools, dies, moulds, consumed materials and similar items, and such services as development, design and associated services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re supplied by the buyer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for export of the import goods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5) royalties and license fees related to the import goods that the buyer must pay, as a condition for sale of such goods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6) the value of any part of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goods that accrue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Article 20

The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taxes and charges that are specified in the price of such import goods at the time of importation:

- (1) charges for construction, erection, assembly, maintenance, or technical assistanc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on import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machinery or equipment;
- (2)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after unloading of import good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 (3) import duty and other internal taxes.

Article 21

Where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 goods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8 of these Regulations, or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transaction value, the Customs shall, after acquainting itself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consulting over price with the duty payer, determine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values in their given order:

- (1) the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sold for export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xported at or about the same time as the goods being valued;
- (2)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sold for export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xported at or about the same time as the goods being valued;
- (3) the unit price at which the import goods or identical or similar import goods are sold in the greatest aggregate quantity, at or abou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goods being valued, to an unrelated buyer in the first sale, with all items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se Regulations deducted;
- (4) the computed value which consists of the total sum of the following items: the cost or value of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employed in producing the import goods; an amount for profit and general expenses equal to that usually reflected in sales of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as the import goods being valued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prior to unloading of import good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 (5) the value determined on a reasonable basis.

The duty payer may, after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or data to the Customs, make a request to reverse the order of the application of items (3) and (4) of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22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in accordance with item (3) of Paragraph 1 of Article 21 of these Regulations, the items that shall be deducted are as follows:

- (1) either profit and general expenses or commissions usually paid in the first sale of

import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2)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after unloading of import good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 (3) import duty and internal taxes.

Article 23

The customs value of import goods on lease shall be the rental determined by the Customs.

Where the duty payer requests to pay the duties in a lump sum, it may choose to have the customs valu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of these Regulations or take total rental determined by the Customs as the customs value.

Article 24

The customs value of goods which are trans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for processing with the declaration thereof made to the Customs at the time of departure and re-trans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within the time limit set by the Custom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harges on overseas processing, the cos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the costs of the re-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re-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for the re-transport.

Article 25

The customs value for mechanic appliances, means of transport or any other goods which are trans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for repairs with the declaration thereof made to the Customs at the time of departure and re-trans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within the time limit set by the Custom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harges on the repairs and the cos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used for the repairs.

Article 26

The customs value of export goo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on the basis of the transaction value thereof and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prior to loading of such goods at the port or place of departure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ansaction value of export goods is the total amount of the price that shall be charged by the sell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buyer for the goods sold for export.

The export duty shall not be added to the customs value of export goods.

Article 27

Wher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transaction value of export goods, the Customs shall, after acquainting itself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consulting over price with the duty payer, determine the customs value of export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values in their given order:

- (1) the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sold for export to the same country or region of importation and exported at or about the same time as the goods being valued;
- (2)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sold for export to the same country or region of importation and exported at or about the same time as the goods being valued;
- (3) the computed value which consists of the total sum of the following items: the cost or value of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employed in producing the identical or similar goods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normal profit and general expenses; the costs of transport, charge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he cost of insurance incurred within the

- Customs territory;
- (4) the value determined on a reasonable basis.

Article 28

The additions or deductions of costs, charges or taxes to or from the customs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

Chapter IV

Duty Collection on Import and Export Goods

Article 29

Declaration of import goods shall be made to the Customs at the port or place of entry by the duty payer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declaration of entry of the means of transport; declaration of export goods shall, unless otherwise specially approved by the Customs, be made to the Customs at the port or place of departure by the duty payer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Customs Surveillance Zone and 24 hours prior to loading thereof. Import or export goods in transit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n advance declaration may be made by the duty payer with the approval of the Customs before the arrival of import goods. The specific measures therefor shall be separately formulat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30

The duty payer shall make a truthful declaration to the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ovide, as required by the Customs, the relevant information or data needed for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classification of goods, determination of

origin, or adoption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or safeguard measures. When necessary, the Customs may require the duty payer to make a supplementary declaration.

Article 31

The duty payer shall classify the declared import or export goods into the corresponding tariff heading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headings, the general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and the notes to sections, chapters or sub-headings as well as other explanatory notes to classification, which are prescribed in the Tariff. The Customs shall verify and determine the good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law.

Article 32

The Customs may require the duty payer to provide the information or data needed for goods classification and, when necessary, organize laboratory analysis or inspe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r inspection shall, after being confirmed by the Customs, be taken as the grounds for goods classification.

Article 33

The Customs may, in order to verify the truth and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examine or copy the contracts, invoices, accounts, certificates for foreign exchange payment and settlement, bills, records, documents, business correspondences, audio and visual products related to import and export goods and other materials reflecting the relationship and transac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Where the Customs has doubts about the value declared by the duty payer and the duties involved are of a large amount, the Customs may, upon the approval of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directly under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r the director of a Customs office subordinate to and authorized by the former and on the strength of the Notice for Assistance in Account Inquiry with the format unifi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nd credentials of relevant staff members, inquire about the fund transactions through the unit accounts opened at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by the duty payer, and inform the banking regulatory agency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34

Where the Customs has doubts about the value declared by the duty payer, the Customs shall inform the duty payer in writing of the grounds for such doubts and require the duty payer to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within a specified time limit.

If the duty payer fails to provide explanation and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or the Customs still has reasonable doubts abou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the Customs may refuse to accept the declared value and determine the customs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of these Regulations.

Article 35

Upon determination of the customs value of import or export goods by the Customs, the duty payer may request the Customs in writing to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as to how the customs value of import or export goods is determined. The Customs shall provide the written explanation to the duty payer accordingly.

Article 36

The duty on import or export goods shall be collected in the form of ad valorem duty, specific duty, or other forms prescribed by the State.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d valorem duty is: Duty Payable=Customs Value × Duty Rate

The calculation formula for specific duty is: Duty Payable = Quantity of Goods ×

Unit Duty

Article 37

The duty payer shall pay the duties at a designated bank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memorandum of duty payment by the Customs. In case of any payment in arrears, 0.05% of the total amount of the overdue duties shall be charged as a fine for late payment per day from the date when the delayed payment occurs.

The Customs may publish the information about the arrearages on duties by duty payers.

The Customs shall issue a duty-memo for duties collected or receipt for fines for late payment. The format of the duty-memo or receipt shall be prescrib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38

The Customs shall collect duties and fines for late payment in terms of RMB.

Where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 or export goods and associated costs are computed in a foreign currency, such foreign currency shall be converted into RMB at the basic exchange rate publish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for the calculation of customs value. Where such basic exchange rate is not available for the foreign currency in question, the customs value shall be converted into RMB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 The date when the exchange rate appli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39

Where the duty payer cannot pay duties within the time limit due to force majeure or adjustments to the State's taxation policy, such time limit may be extended upon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but in any case the extension shall not exceed six months.

Article 40

Where there is an obvious indication that the duty payer of import or export goods is transferring or concealing the dutiable goods or other property in the specified time limit for duty payment, the Customs may order the duty payer to provide a bond; if the duty payer fails to do so, the Customs may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duty col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1 of the Customs Law.

Where the duty payer or the guarantor thereof fails to pay the duti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duty payment, the Customs may take compulso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0 of the Customs Law.

Article 41

Where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for processing trade are imported in bo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e, but such import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or the finished products made thereof are not exported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the Customs shall collect import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Where the import duty has been collected on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for processing trade upon entr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e and such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or the finished products made thereof are exported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the Customs shall refund the duties previousl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Article 42

Where the following goods are permitted by the Customs to temporarily enter or leave the Customs territory and a cash deposi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at of the duties payable or a bond in another form has been provided to the Customs by the duty payer upon entry or departure, the duties of such goods may be temporarily

exempted, on the condition that such goods shall be re-transported out of or into the Customs territor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or departure. Upon the request of the duty payer, the Customs may extend the time limit for re-transportation out of or into the Custom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 (1) goods for display or use at exhibitions, fairs, meetings or similar events;
- (2) items for performance or contest in cultural or sports exchange;
- (3) apparatus, equipment or items for press, cinematography or television programs;
- (4) apparatus, equipment or items for scientific research, pedagogical or medical activities;
- (5) means of transport and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for functions specified in Items (1) through (4) of this Paragraph;
- (6) samples;
- (7) apparatus and tools for installation, adjustment or test of equipment;
- (8) containers of goods;
- (9) other goods intend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Where the goods permitted to temporarily enter or leave the Customs territory in Paragraph 1 are not re-transported out of or into the Customs territory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the Customs shall collect duties according to law.

Import duty on the goods permitted to temporarily enter the Customs territory other than those that are temporarily exempted from duties as prescribed by Paragraph 1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customs value of such goods and the proportion of the time when such goods remain inside the Customs territory to the time of depreciation. The specific measures therefor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43

No import duty shall be collected on export goods re-trans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in the same stat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exportation due to problems with quality or specifications.

No export duty shall be collected on import goods re-trans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in the same stat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mportation due to problems with quality or specifications.

Article 44

Where, due to damage, shortage, poor quality or u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f import or export goods, the consignor or carrier of such goods or the insurance company provides, free of charge, identical import or export goods as compensation or replacement, no duties shall be collected on such identical goods. Where the original import or export goods that are replaced free of charge are not re-transported out of or into the Customs territory, the Customs shall re-collect duties there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Article 45

The following import and export goods shall be exempted from duties:

- (1) goods of a single consignment on which the duties are estimated to be not more than RMB 50 yuan;
- (2) advertising matter and samples, which are of no commercial value;
- (3) goods and materials, which are rendered grati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oreign governments;
- (4) goods lost prior to Customs release;
- (5) fuels, stores, beverages and provisions for use en route loaded on any means of transport, which is in transit across the frontier.

The duties on goods damaged prior to Customs release may be de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damage confirmed by the Customs.

The Custom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grant duty reduction

or exemption to other goods that are subject to duty reduction or exemption prescribed by law.

Article 46

Duty reduction or exemption granted to import and export goods of special areas or special enterprises or for special uses, as well as temporary duty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 Council.

Article 47

Any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collected on import goods by the Customs on behalf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48

Where the duty payer is to import or export goods granted duty reduction or exemption, the duty payer shall, unless otherwise prescribed, go through the formalities with the Customs for approval of duty reduction or exemption by presenting relevant documents as required before such goods are imported or exported. The duty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granted if the Customs confirms such goods as qualified through examination.

Article 49

Where the import goods which are granted duty reduction or exemption and the use of which are under the Customs control are diverted to other purposes within the duration of Customs control and therefore the recovery of duties is needed, the import duty shall be recovered by the Customs on the basis of the value of import goods depreciated according to the time after importation.

The duration of the Customs control over import goods granted special duty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50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duty payer may,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duty payment, apply for a refund of duties by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in writing to the Customs and providing the original duty-memo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 (1) where any goods, on which the import duty has been collected, are re-transported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in the original state due to problems with quality or specifications;
- (2) where any goods, on which the export duty has been collected, are re-trans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in the original state due to problems with quality or specifications and all internal taxes refunded for export have been repaid;
- (3) where any goods, on which the export duty has been paid, are re-declared to the Customs as shut-out cargo because they are not loaded for export due to certain reasons.

The Customs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ccepting an application for duty refund, ascertain the relevant facts and notify the duty payer to go through the refund formalities. The duty payer shall go through the refund formaliti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Where duties shall be refu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other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ustoms shall refund duties accordingly.

Article 51

Where the Customs finds that duties are short-collected or not collected on a consignment of import or export goods after the release, the Customs shall recover the duties payable from the duty payer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duty payment

or the release. If the short-collected or non-collected duties are attributable to the duty paye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the Customs may pursue the payment of the unpaid dutie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uty payment or the release, and impose a fine for late payment of 0.05% of the short-collected or non-collected duties per day from the date of the duty payment or the release.

Where the Customs finds that the short-collection or non-collection of duties on goods under Customs control is attributable to the duty paye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the Customs shall pursue the payment of the unpaid dutie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uty payment or the release, and impose a fine for late payment of 0.05% of the short-collected or non-collected duties per day from the date of the duty payment or the release.

Article 52

Upon finding any over-collection of duties, the Custom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duty payer to go through the refund formalities.

Upon finding any over-collection of duties, the duty payer may,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duty payment, request in writing the Customs to refund the over-collected duties together with the interest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computed at the current deposit interest rate of the bank. The Customs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ccepting the application for duty refund, ascertain the relevant facts and notify the duty payer to go through the refund formalities.

The duty payer shall go through the refund formaliti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53

Where the refund of duties or interest incurred therefrom under Articles 50 and 52 of these Regulations involves refund from the State treasury, such refund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the State treasury.

Article 54

Where a Customs broker that is commissioned by a duty payer to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declaration and duty payment in the name of the duty payer violates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us causes the short-collection or non-collection of duties, the Customs broker shall bea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 the duty payer for payment of the short-collected or non-collected duties and fines for late payment.

Where a Customs broker is commissioned by a duty payer to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declaration and duty payment in the name of the Customs broker, the Customs broker shall bea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 the duty payer for duty payment.

Where, except due to force majeure, goods under Customs control are damaged, destroyed or irrecoverably lost during the period of Customs control, the person who is obliged to keep such goods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iability for duty payment.

Article 55

Where a duty payer that is in arrears with duty payment comes under circumstances such as merger or division, the duty payer shall, prior to the merger or division, notify the Customs and pay off the duties. If the duty payer fails to pay off the duties when it is merged, the legal person or other organization that results from the merger shall continue to fulfill the duty payment obligation that has not been fulfilled. If the duty payer fails to pay off the duties when it is divided, the legal person or other organization that results from the division shall bea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fulfilling the duty payment obligation that has not been fulfilled.

Where a duty payer, during the period of Customs control over goods granted duty reduction or exemption or bonded goods, comes under circumstances such as merger, division or any other form of asset restructuring, the duty payer shall make a report

thereon to the Customs. Those that need to pay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shall pay off the duties according to law. Those that may continue to enjoy duty reduction or exemption or bond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shall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change of the duty payer with the Customs.

Where a duty payer is in arrears with the payment of duties or, during the period of Customs control over goods granted duty reduction or exemption or bonded goods, comes under circumstances such as dissolution, disbandment, bankruptcy or any other statutory form of termination, the duty payer shall make a report thereon to the Customs prior to the liquidation. The Customs shall collect all the duties payable from the duty payer according to law.

Chapter V

Collection of Flat Duty on Inward Articles

Article 56

The import duty on inward articles and taxes collected by the Customs on behalf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for importation of such articles are amalgamated into the flat duty, which shall be collected by the Customs according to law.

Article 57

Inward articles for personal use the aggregate value or quantity of which is within the quota prescrib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shall be exempted from flat duty.

The flat duty on inward articles for personal use that exceed the quota prescrib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but are still within a reasonable quantity shall be paid by the duty payer of such inward 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prior to the release.

Where inward articles exceed the reasonable quantity for personal use, the relevant formalities shall be gone through in accordance with that of import goods.

The duty on inward articles that are deemed as import goods by the Tariff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for duty collection shall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s II through IV of these Regulations.

Article 58

The duty payer of inward articles refers to the person who carries articles into the Customs territory, the addressee of inward postal items, or the recipient of articles imported in any other ways.

Article 59

The duty payer of inward articles may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duty payment on its own or commission an agent to go through such formalities. The agent commissioned shall abide by all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on the duty payer.

Article 60

Flat duty shall be collected in terms of ad valorem duty.

The calculation formula of flat duty is: Flat Duty Payable= Customs Value ×Flat Duty Rate

Article 61

The Customs shall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customs value and applicable duty rate of inward 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e Flat Duty Rates on Inward Articles, and the Classification Table of Inward Articl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ustoms Value Table of Inward Articl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are formulat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62

The flat duty rate and customs value implemented on the date when the Customs issues the memorandum of duty payment shall apply to inward articles.

Article 63

The reduction, exemption, recovery, pursuit and refund of flat duty and the collection of flat duty on inward articles permitted to be temporarily trans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on collection of import duty on goods.

Chapter VI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64

Where the duty payer or guarantor has objections to the Customs' determination of the duty payer or customs value; goods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of origin, applicable duty rates or exchange rates; duty reduction, exemption, recovery or refund; collection of fines for late payment; or determination of the manner and place of duty collection; it shall pay the duties and may apply to the Customs at the next higher level for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ccording to law; if the duty payer or guarantor refuses to accept the decision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it may lodge a lawsuit to the people's court according to law.

Article 65

Tax collection by the Customs on behalf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for importation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administration of duty collection.

Article 66

The penalty for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Law, the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under the Custom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ther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67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mport and Export Duties revised and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on March 18, 1992 shall be simultaneously repealed.

부록 V.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⁴⁾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의 검사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공공의 이익과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각 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 검사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를 설립하여 전국의 수출입상품의 검사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의 상검부서는 각 지역의 수출입상품 상검기구(이하 '상검기구')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 상품검사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 상검부서의 허가를 거친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마땅히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기만행위를 방지하며 국가안전수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상검부서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 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실시를 공포한다.

제5조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판매·사용을 불허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4)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의개정에관한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수출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출입상품에 있어 그 중 국가가 규정하는 검사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수인과 적송인이 신청하여 국가상 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상품검사란 목록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합격 평가활동을 말한다. 합격 평가절차는 견본·검사·조사·평가·검증·합격보증·등록·인가와 비준 및 각 항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7조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아직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이전에는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하는 국외유관표준을 참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국가 상검부서의 허가를 거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관계인 또는 외국검사기구의 위탁을 접수하여 수출입상품의 검사감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법률·행정법규가 기타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또는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적시에 관련 방면에 수출입상품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은 수출입 상품검사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중에 알게된 상업기밀에 대하여 기밀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1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세관신고지의 상검기구에 세관통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검기구가 서명발송한 화물통관증명에 따라 검사를 마친 뒤 통관시킨다.

제12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지점과 기한이 내에 상검기구의 수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마땅히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 이외의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상검기구가 증명을 발행하여 배상을 요구해야하는 경우 마땅히 상검기구에 검사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의 세트설비에 대하여 수하인은 마땅히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수출국이 선적하기 전에 사전검사·제조감시 또는 선적감시를 실시하고 주관부서는 마땅히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15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출상품의 적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지점과 기한 이내에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 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이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세관은 상검기구가 서명발행한 화물통관증명에 따라 검사를 마친 뒤 통관시킨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상품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출통관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마땅히 재차 통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화물을 위하여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사용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합격을 거치지 아니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위험화물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18조 쉽게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식품을 선적하는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기관은 반드시 선적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합격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상검기구는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출입상품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부서는 추출검사 결과를 공포하거나 유관부서에 추출검사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을 위한 편의제공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규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출고 전에 품질감독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을 위하여 검사수속을 처리하는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에 등록등기를 하여야 한다. 통관신고수속의 처리시 상검기구에 수권위

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 상검부서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검사기구가 위탁한 수출입상품의 검사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상검부서가 허가하는 검사기구의 수출입 상품검사감정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며 검사한 상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상검부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관련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검기구는 국가 상검부서가 외국유관기구와 체결한 협의 또는 외국유관기구의 위탁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품질인증작업을 진행하고 인증합격한 수출입상품상에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증관리를 실시하며 증서를 검사하고 증서와 화물이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상품검사표지 또는 봉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고자는 상검기구가 내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상검기구 또는 그 상급 상검기구 및 국가 상검부서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을 수리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 상검부서는 적시에 재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상검기구·국가 상검부서가 내린 재검결론에 불복하거나 또는 상검기구가 내린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정직권과 법정절차에 의거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법에 근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필요에 따라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상검 업무인원이 양호한 정치·업무적 소질을 함양하도록하여야 한다. 상검업무인원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업무연수와 심사를 수용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비로소 현장에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상검 업무인원은 반드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복무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건전한 내부감독제도를 수립하여 업무인원의 집행활동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검기구의 내부에서 검사신고·검사·증명통관 등을 수리하는 주요 직책의 직책권한은 마땅히 명확하여야 하며 상호분리되고 상호견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든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 및 그 업무인원의 위법·규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직책분장에 따라 적시에 조사하며 고발인·신고인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하는 수출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또는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하는 수출상품을 검사합격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출한 경우 상검

기구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이물질·가짜물질을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거나 질이 낮은 것으로 질이 우수한 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불합격의 수출입상품을 합격한 수출입상품으로 둔갑시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상검기구는 수입 또는 수출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금액의 5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6조 상품검사증빙서류·인감·표지·봉인·품질인증표지 등을 위조·변조·매매·절도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금액의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이 이 법이 규정을 위반하고 알게 된 상업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8조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곤란함을 초래하게 하고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며 검사결과를 위조한 경우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증명을 연기하게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 상검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감정업무를 처리하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VI.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⁵⁾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ese Regulations ar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customs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safeguarding public interests.

Article 2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se Regulations means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Customs for the exclusive rights to use a trademark, copyrights and their related rights, and patent rights(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import or export goods and protected under the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3

The State prohibits the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goods which infringe

5) Adopted at the 30th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 November 26, 2003, promulgated by Decree No. 395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December 2, 2003, and effective as of March 1, 200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ustoms provides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these Regulations, and exercises relevant powers under the Custom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4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re requesting the Customs to provide protection for h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ustoms for taking protective measures.

Article 5

The consignees of import goods or their agents, and the consignors of export goods or their agents shall truthfully declar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heir import or export goods and present relevant evidentiary documents to the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e.

Article 6

When providing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ustoms shall keep the confidentiality of commercial secrets of the interested parties.

Chapter II

Record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7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apply for recordation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h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when applying for the recordation, he shall

present a written application.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particulars:

- (1) the name, place of registration or nationality, etc. of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2) the name, content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3) the status quo relating to licens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4) the name, origin, Customs at the port of entry or exit, importer or exporter, main features and prices, etc. of the goods on which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fully exercises his right;
- (5) the manufacturers, importers or exporters, Customs at the port of entry or exit, main features and prices, etc. of the goods tha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far as it is known.

Where there are evidentiary documents in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attach evidentiary documents.

Article 8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shall, withi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ll the application documents, mak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grant the recordation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where the recordation is not granted, reasons thereof shall be explained.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shall not grant the recordation:

- (1) where the application documents are incomplete or invalid;
- (2)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3)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 longer protected under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9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may revoke a recordation where the Customs finds that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not truthfully provided the relevant information or documents in the course of applying for the record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10

A recordation for customs protec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n whic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rants the recordation and shall be valid for a term of 10 years.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apply to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for renewal of the recordation for customs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in six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validity,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valid. Each renewal of a recordation shall be valid for a term of 10 years.

A recordation for customs protec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cease to be valid immediately where no application is presented for renewal of the recordation for customs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pon expiration of its term of validity, or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 longer protected under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11

Where there is any change in respect of a recor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go through the procedures of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recordation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withi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occurrence of such change.

Chapter III

Application for Detention of Suspected Infringing Goods and Disposal Thereof

Article 12

Where discovering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pending importation or exportation,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present an application with the Customs at the port of entry or exit for detaining such goods.

Article 13

Where requesting the Customs to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present a written application and relevant evidentiary documents, and provide as well any evidence that sufficiently proves the obvious existence of the fact of infringement.

An application shall mainly include the following particulars:

- (1) the name, place of registration or nationality, etc. of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2) the name, content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3) the names of the consignee and consignor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 (4) the names, specifications, etc.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 (5) the possible ports, time, means of transport, etc. related to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number of customs recordation in addition where the goods are suspected of infringing a recor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14

Where requesting the Customs to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provide the Customs with a security not exceeding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goods to cover the possible compensation for the losses suffered by the consignee or consignor due to an improper application, and the payment of the expenses of warehousing, maintenance and disposal of the goods incurred after being detained by the Customs. The corresponding amou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security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kes a direct payment of the expenses of warehousing and maintenance to the warehousing entity. Specific measures therefor are formulat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rticle 15

Where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applied for detention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se Regulations and provided a securit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se Regulations, the Customs shall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of the detention and serve the consignee or consignor with a Customs Detention Receipt.

Where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se Regulations when applying for detaining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or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se Regulations when providing a security, the Customs shall refuse the application and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of such refusal.

Article 16

Where discovering any import or export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 recor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ustom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of such suspected infringement.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esents an appl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se Regulations and provides a securit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se Regulations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fication, the Customs shall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of such detention and serve a Customs Detention Receipt on the consignee or consignor. The Customs shall not detain the goods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ils to present an application or to provide a security within the period.

Article 17

With consent of the Customs,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he consignor or consignee may inspect the relevant goods.

Article 18

Where believing that his goods have not infringed the right of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onsignee or consignor shall present a written explanation to the Customs as well as the relevant evidence.

Article 19

Where believing that his import or export goods have not infringed a patent, the consignee or consignor of the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the patent may request the Customs to release the goods after providing the Customs with a security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goods. The Customs shall refund the security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ils to file a lawsuit before the people's cour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rticle 20

Where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ests the Customs to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after the Customs discovers the import or export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the recor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notifies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uch suspected infringement, the Customs shall carry out an investigation and make, withi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detention,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detention have infringe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re the determination cannot be made, the Custom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Article 21

Where the Customs, when carrying out an investigation o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which have been detained, requests any assistance from the competent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the relevant competent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Where the competent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when handling a case of infringement involving import or export goods, requests any assistance from the Customs, the Customs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Article 22

When the Customs carries out an investigation o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detention and other details of the case, both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he consignee or consignor shall provide cooperation.

Article 23

After presenting an application to the Customs for taking protective measures,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ly to the people's court for the adoption of measures to order the cease of the infringing act or

for preservation of property against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detention before filing a lawsuit.

Where receiving a notification from the people's court for assistance in execution of an order to cease an infringing act or for preservation of property, the Customs shall provide assistance.

Article 24

The Customs shall release the detained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where, after detaining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se Regulations, the Customs has not received any notification from the people's court for assistance in execution of an order within 2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the detention;
- (2) where, after detaining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se Regulations, the Customs has not received any notification from the people's court for assistance in execution of an order and cannot determine through investigation that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detention have infringe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in 5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the detention;
- (3) where the consignee or consignor of the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a patent requests the Customs to release his goods after providing the Customs with a security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goods;
- (4) where the Customs is convinced that the consignee or consignor possesses ample evidence proving that his goods have not infringed the right of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25

Where the Customs detains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make the payment of the relevant expenses for warehousing, maintenance and disposal of the goods.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ils to make such payment, the Customs may deduct it from the security he provided to the Customs or require the guarantor to perform the relevant duty of guarantee.

Where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are determined to have infringe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claim the paid expenses for warehousing, maintenance and disposal as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halting the infringement.

Article 26

Where discovering any suspected criminal offence in providing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ustoms shall hand the case over to the public security authorities for handling according to law.

Chapter IV

Legal Liability

Article 27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under detention shall be confiscated by the Customs where such goods are determined to have infringe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the Customs after investigation.

After confiscating the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ustoms shall notify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writing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goods of infringement.

Where the confiscated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 be used for public welfare undertakings, the Customs shall hand such goods over to the relevant

public welfare bodies for use in public welfare undertakings; where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tends to purchase the goods, the Customs may have such goods assigned to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 compensation. Where the confiscated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not be used for public welfare undertakings or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no intention to purchase the goods, the Customs may have such goods auctioned according to law after removing their infringing features; where the infringing features cannot be removed, the Customs shall destroy the goods.

Article 28

The articles carried on person, or posted, into or out of the territory shall be confiscated by the Customs if the quantity of such articles exceeds the reasonable limit for personal use and such articles have infringed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vided for by Article 2 of these Regulations.

Article 29

Where the Customs, after accepting an application for record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for adopting protective measures fo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ils to discover the infringing goods or to adopt timely protective measures, or adopts protective measures ineffectively, due to the failure on the part of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provide exact information,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Where the holder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ests the Customs to detain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the Customs cannot determine that the detained suspected infringing goods have infringed h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the people's court adjudicates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of h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ar liability for compensation according to law.

Article 30

Where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stitutes a crime, criminal liability shall be investigated according to law.

Article 31

Any Customs officer who neglects his duty, abuses powers, or commits illegalities for personal gains or by fraudulent means in providing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investigated for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law if a crime is constituted; if the act has not constituted a crime, an administrative sanction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law.

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32

Where record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pay a recordation fe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

Article 33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as of March 1, 2004.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on July 5, 1995 shall be repealed simultaneously.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2011년 12월 23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76-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